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아르헨티나**

2013. 12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본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르헨티나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르헨티나 연방조세청과 경제부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 목 차

I. 개 관	9
1. 일반 개황	9
2. 경제 개황	12
가.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지표	12
나.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동향	15
다.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 동향	18
3.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의 교역 관계	22
4. 아르헨티나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25
가. 아르헨티나의 자유무역협정	25
나. 우리나라와 FTA 추진 동향	27
5. 아르헨티나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추진 현황	29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31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	31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33
가. 수입 정책(Import policies)	34
나. 수입 규제	35
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35
라. 지식재산권	36
마. 투자 장벽	37
III. 아르헨티나의 통관환경	39
1. 통관행정 개요	39
가. 통관행정 조직	39

나. 주요 통관제도	42
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51
라. 관세 환급 및 관세법 위반 시 제재	59
마. 피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자유무역지대	60
바. 주요 인증 제도	61
2. 아르헨티나의 통관 절차	67
가. 수입통관 절차	67
IV.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71
1. 사전수입신고	72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2
나. 업무상 유의점	73
2. 세관 심사	76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6
나. 업무상 유의점	76
3. 세금 납부	77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7
나. 업무상 유의점	79
4. 물품 반출 및 환급	80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80
나. 업무상 유의점	80
참고문헌	82
부 록	84
부록 I. 비즈니스 팁	84
부록 II. 주요 유관기관 정보	87
부록 III. 아르헨티나 관세법(Codigo Aduanero de Argentina)	90

## 표목차

〈표 I -1〉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지표	13
〈표 I -2〉 최근 아르헨티나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15
〈표 I -3〉 최근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목	16
〈표 I -4〉 최근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품목	17
〈표 I -5〉 2012년 아르헨티나의 국별 수출입 현황	17
〈표 I -6〉 아르헨티나의 연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18
〈표 I -7〉 對아르헨티나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19
〈표 I -8〉 아르헨티나의 연간 외국인 투자 실적	19
〈표 I -9〉 국가별 외국인 투자 현황	20
〈표 I -10〉 최근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투자 현황	21
〈표 I -11〉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업종별 투자 현황	21
〈표 I -12〉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교역량 및 무역수지	23
〈표 I -13〉 최근 對 아르헨티나 10대 수출품목	23
〈표 I -14〉 최근 對아르헨티나 10대 수입품목	24
〈표 I -15〉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26
〈표 I -16〉 MERCOSUR-EU 협상 주요 쟁점 사항	27
〈표 I -17〉 한· MERCOSUR FTA 추진경과	28
〈표 I -18〉 SAOC 프로그램 발전 현황	29
〈표 II -1〉 「Doing Business 2013」 아르헨티나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32
〈표 II -2〉 아르헨티나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표	32
〈표 II -3〉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시 필요 서류	33
〈표 III -1〉 사전수입신고제도 주요 조항	44

〈표 Ⅲ-2〉 NCM(HS) 코드별 지정세관.....	50
〈표 Ⅲ-3〉 아르헨티나 품목별 관세율 .....	52
〈표 Ⅲ-4〉 2011년 아르헨티나 관세율체계 .....	53
〈표 Ⅲ-5〉 2011년 수입가격기준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54
〈표 Ⅲ-6〉 아르헨티나 수입품목별 관세율.....	54
〈표 Ⅲ-7〉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57
〈표 Ⅲ-8〉 아르헨티나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계산 예시.....	59
〈표 Ⅲ-9〉 INTI 인증분야.....	64
〈표 Ⅲ-10〉 품목별 인증·허가 필요사항 및 담당기관.....	66
〈표 Ⅳ-1〉 아르헨티나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71

## 그림목차

[그림 Ⅲ-1] 아르헨티나 연방조세청(AFIP) 조직도 .....	41
[그림 Ⅲ-2] 사전수입신고 절차 .....	43
[그림 Ⅲ-3] 품목별 수입허가(LNA) 신청처 .....	46
[그림 Ⅲ-4] 아르헨티나의 수입통관 절차 .....	70
[그림 Ⅳ-1] 세금 납부 신청 WEB .....	78
[그림 Ⅳ-2] 납부한 세금 확인 가능 웹 .....	79



# I. 개 관

## 1. 일반 개황

- 정식 국명은 아르헨티나공화국으로(Republica Argentina) 남미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수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임
  - 국명은 Argentum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은(Silver)을 뜻함
  
- 아르헨티나는 1개 연방수도와 23개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독자적인 행정권 및 사법권을 소유함
  -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이며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동시에 주요 항구도시로 아르헨티나 무역량의 75%가 이곳에서 처리됨
  
-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4천 88만명이며, 대부분 유럽계 백인임
  - 아르헨티나에는 약 95%의 백인, 4.5%의 메스티소, 0.3%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백인은 이탈리아계 및 스페인계가 85%를 차지함
  - 대부분의 아르헨티나인들은 유럽에서 온 식민시대 정착민과 19~20세기 이주민들의 후손임
  
- 아르헨티나의 국토 면적은 2,791,810km<sup>2</sup><sup>1)</sup>로 한반도의 약 12.6배에 달하며, 서쪽으로는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칠레, 북쪽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동쪽으로는 브라질, 우루과이, 남쪽은 남대서양과 접경함
  - 남극지역 및 사우스조지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으로 영국, 프랑스 등

---

1) 남극대륙(964,847km<sup>2</sup>) 및 남부도서(4,617km<sup>2</sup>) 제외

타국가들과 영토 분쟁 중에 있음

-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에는 길이 약 4,700km의 라플라타(La Plata) 강이 흐르는데 강폭이 약 220km로 남미에서 가장 넓은 강임
  - 4계절이 있고, 북부 아열대 기후부터 남부 한대 기후까지 분포함
- 종교는 전체 국민의 약 92%가 가톨릭교이며, 나머지는 기독교와 유대교 및 기타 토속 종교임
- 아르헨티나는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선출되지 못함
-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 임기 4년에 1회 재임이 가능함
- 여당은 승리당(Frente Para la Victoria), 정의주의당(Partido Justicialista)이 있으며, 야당은 혁신당(Union Civica Radical), 평등주의당(Afirmacion para una Republica Igualitaria), 공화당(Propuesta Republicana)이 있음
- 아르헨티나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며, 원주민(Indigena)들이 살고 있는 극소수 지역에서는 과라니(Guarani)어 등 원주민어를 사용함
-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농목축업 분야가 발달되어 있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임
- 세계 8위의 국토면적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의 광활한 초지대를 바탕으로 농축산업이 발달해 있는 농업강국이며, 원유, 천연가스는 물론 동광, 은 등 각종 광물자원도 풍부한 자원부국임
-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아르헨티나 페소(Peso, ARS)’이며, 2012년 5월 21일 기준 1달러는 약 5.24 페소임<sup>2)</sup>
- 지폐와 동전의 종류는 각 6가지로 지폐는 2, 5 10, 20, 50, 100페소, 동전은 100, 50,

2) 환율조회처 [www.ko.exchange-rates.org/converter/USD/ARS/1/Y](http://www.ko.exchange-rates.org/converter/USD/ARS/1/Y)

25, 10, 5, 1 센타보(Centavo)임

- 아르헨티나의 2012년 재정적자는 약 23억달러로 2011년 대비 300% 증가하는 등 재정적자 폭이 확대됨
  - 2012년 약 28억달러의 예산 중 연방정부가 자력으로 충당하는 예산은 약 1억달러에 불과함
  
-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은 B-(등급전망 부정적)<sup>3)</sup>로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했으며, 하락의 원인은 부채관리 능력 저하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임
  - 아르헨티나의 채무총액은 2010년 기준 1,286억달러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약 35%로 여전히 과중한 수준임
  
-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역내 MERCOSUR 회원국<sup>4)</sup>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함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MERCOSUR의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경제블록의 정책 및 외교 방향을 견인하는 역할임
  
- 아르헨티나는 MERCOSUR 외에도 지역 통합체 회원국으로 중남미 경제블록에 참여하고 있음
  - 중남미통합연합(ALADI), 중미통합체제(SICA),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안데스공동체(CAN, 준회원국) 등
  
- 중남미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외교정책 추진으로 미국 및 유럽 국가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됨
  - 강한 좌파 성향의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자국 국민의 반미 정서로 인해 미국과는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3)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4)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아시아와의 관계는 1990년대 초부터 발전해 왔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對아시아 수출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지역과의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은 2010년도 아르헨티나 대외 수출의 19%를 차지하며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아시아 제 1 수출 대상국가임

## 2. 경제 개황

### 가.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지표

- 2012년 아르헨티나 GDP는 약 4,728억달러, 경제성장률은 3.7%이며 물가상승률은 10.8%임
  - GDP는 전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경제성장률은 5.2% 감소함
-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경제성장률은 4.4%, 물가는 10.8%로 예상되는 등 전년 대비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 2013년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및 2013년 총선으로 인한 내수경제 성장 등 아르헨티나의 2013년 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표 I-1〉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GDP(억달러)	3,285	3,087	3,718	4,351	4,728
경제성장률(%)	6.8	0.9	9.2	8.9	3.7
1인당 GDP(달러)	8,224	7,643	9,092	10,896	11,467
물가상승률(%)	7.2	7.7	10.9	9.5	10.8
실업률(%)	7.3	8.4	7.3	6.7	7.0
대미달러환율(페소/달러)	3.16	3.73	3.91	4.13	4.80
수출(백만달러)	70,558	55,750	68,500	84,051	80,927
수입(백만달러)	57,413	38,771	56,443	74,319	68,507
무역수지(백만달러)	13,175	16,980	12,057	9,732	12,420
외환보유(억달러)	463.9	479.6	521.9	463.7	450.1

자료: IMF,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한국수출입은행

-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와 달리, 실제 아르헨티나 내의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상황은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sup>5)</sup>
  -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 통계와 인플레이션은 몇몇 국제기구에 의해 통계 왜곡으로 정정요구를 받아왔음
  - IMF는 금년 하반기까지 물가를 비롯한 경제지표들이 부정확하거나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IMF에서 배제하겠다고 공표함
  
- 아르헨티나 컨설팅 업체 및 민간 연구소는 2013년 인플레이션을 25.6% 정도로 추산했으며 노동계는 이를 고려해 25~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sup>6)</sup>
  
- 아르헨티나 경제의 최대 현안인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소비자 가격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물가 안정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물가 안정화 협약의 일환인 가격 동결제는 월마트, 코토, 점보 등 아르헨티나 전국

5) www.imf.org

6) www.fiel.org

대형 슈퍼마켓의 모든 물건의 가격을 일정기간 동결하는 것임

- 아르헨티나는 채무 만기상황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기술적 채무 불이행(이하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2년 디폴트 선언<sup>7)</sup> 후, 2005년과 2010년 채권자의 92%와 협상을 통해 채무규모를 감축하는 데 합의함
  - 하지만 일부 채권자들은 부채 조정 조건을 거부하였고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가 채권자들에게 13억 3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아르헨티나의 새 채무 계획안을 기다리고 있음
  
- 달러환율 상승 억제 정책으로 2012년 이후 현지에서 달러화 구매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달러화 해외송금도 아르헨티나 정부의 허락 없이 불가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디폴트 사건 이후 폐소화 평가 절하정책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부터 강력한 외환 규제정책을 시행하여 달러 환율 상승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수입규제 강화로 실업률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7.0%를 기록함
  - 2012년 이후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현지 생산을 하던 수입업체들의 재무상황 악화로 전년 대비 실업률이 증가됨
  
- 2013년은 국회 총선이 있는 해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침체를 거듭하던 브라질 경제의 호조가 예상되어 국내 경제의 회복을 전망함

---

7) 2011년 12월, 1천억달러 규모의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한 사건

나.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동향<sup>8)</sup>

- 아르헨티나는 2012년 수출입 모두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124억달러로 약 21% 증가하는 등 불황형 흑자를 기록함
  - 2012년 수출은 전년 대비 약 3.7% 감소한 809억달러, 수입은 약 7.8% 감소한 685억달러를 기록함

〈표 I -2〉 최근 아르헨티나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교역액	127,971	94,521	124,943	158,370	149,434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70,558 (25.1)	55,750 (-20.9)	68,500 (22.8)	84,051 (22.7)	80,927 (-3.7)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57,413 (28.5)	38,771 (-32.4)	56,443 (45.5)	74,319 (316)	68,507 (-7.8)
무역수지	13,175	16,980	12,057	9,732	12,420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IMF

- 전반적인 수출입 금액의 감소에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아르헨티나가 수입규제 정책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했기 때문임
  -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허가제도(LNA)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폐지시켰으나,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등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 2012년 주요 수출품목은 대두박, 옥수수, 석유와 역청유, 대두유, 화물자동차로 전년의 수출 상위 품목과 일치하였으며 승용차, 동광, 철광은 새롭게 순위에 오름
  - 특히 수출 상위 2개 품목인 대두박과 옥수수는 2011년보다 각 9.5%, 11% 증가함

8) 아르헨티나 통계청, IMF, 무역협회

〈표 I-3〉 최근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2011년			2012(1~11)		
	상품 분류	품 목	금 액	상품 분류	품 목	금 액
1	230400	대두박	9,981	230400	대두박	10,933
2	150710	대두유	5,426	100590	옥수수	4,924
3	271019	석유와 역청유	5,365	271019	석유와 역청유	4,708
4	100590	옥수수	4,434	150710	대두유	4,428
5	270900	원유	3,487	870421	화물자동차	3,344
6	870421	화물자동차	3,040	270900	원유	2,906
7	720812	금	2,759	870323	승용차(1,500~3,000cc)	1,724
8	100190	밀과 메슬린	2,551	260300	동광	1,426
9	271011	경질석유	2,212	870322	승용차(1,000~1,500cc)	1,260
10	382490	조제점결제	2,203	730429	철강	1,063

자료: KOTRA 아르헨티나 무역관&gt;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

- 자동차 산업은 브라질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경제 회복세 예상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기준 자동차, 식품, 염기성 금속, 화학, 직물 산업은 아르헨티나 산업의 약 70%를 차지함
- 2012년 주요 수입품목은 승용차, 석유와 역청유, 석유가스, 전화기, 석유가스 등이며 특히 동절기 에너지 수요 증가로 석유 수입 비중이 증가함
- 2012년 초에 시행한 수입규제의 영향으로 여러 품목의 수입액이 감소하였으나 석유가스, 전기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함

〈표 I-4〉 최근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2011년			2012(1~11)		
	상품 분류	품 목	금 액	상품 분류	품 목	금 액
1	271019	석유와 역청유	5,117	870323	승용차(1,500~3,000cc)	4,158
2	870323	승용차(1,500~3,000cc)	4,132	271019	석유와 역청유	3,767
3	271111	석유가스	1,835	271111	석유가스	2,559
4	851712	전화기	1,665	851712	전화기	2,062
5	870322	승용차(1,000~1,500cc)	1,434	851770	전화기 부품	1,693
6	852872	모니터	1,227	271121	석유가스	1,667
7	851770	전화기 부품	1,186	852872	모니터	1,363
8	271121	석유가스	1,085	870322	승용차(1,000~1,500cc)	1,307
9	847130	자동자료처리기계	745	271600	전기에너지	920
10	271600	전기에너지	712	300490	의약품	797

자료: KOTRA 아르헨티나 무역관) 아르헨티나 수출입동향

- 아르헨티나의 주요 교역국은 브라질, 중국, 미국 등으로 전체 교역액의 약 78%를 차지함
- 특히 중국의 경우,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아르헨티나의 제 2대 교역국으로 급부상함

〈표 I-5〉 2012년 아르헨티나의 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순위	수 출		순위	수 입	
	국가명	금 액		국가명	금 액
1	브라질	17,383	1	브라질	68,514
2	중국	5,374	2	중국	14,928
3	칠레	5,321	3	미국	9,353
4	미국	4,665	4	아르헨티나 자유무역지대	6,990
5	스페인	3,549	5	독일	2,931
6	베네수엘라	2,453	6	멕시코	2,063
7	콜롬비아	2,330	7	트리니다드토바고	1,832
8	우루과이	2,258	8	우루과이	1,311
9	네덜란드	2,255	9	이탈리아	1,289
10	독일	2,081	10	프랑스	1,234
16	한국	826	16	한국	902
	총수출	80,927		총수입	68,507

자료: NOSIS 2013

- 우리나라는 2012년도 아르헨티나의 제16위의 수출입 상대국으로 수출 8억달러, 수입 9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간의 수출입 교역액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무역거래량이 많은 국가임

#### 다.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 동향<sup>9)</sup>

- 아르헨티나 정부의 강력한 외환규제,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현지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임
  - 2011년 중남미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나, 아르헨티나는 30% 이상 감소하는 등 외국인 투자 분야의 현저한 하락을 보임
  - 2011년 브라질의 FDI 유입량은 약 670억달러, 멕시코는 190억달러인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72억달러 수준에 머무름

〈표 I-6〉 아르헨티나의 연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단위: 백만달러)

구분		1996-2004	2006-2007	2008	2009	2010	2011
FDI 총액	연간	7,351	5,759	9,726	4,017	7,055	7,243
	누적	-	-	77,066	79,871	87,459	95,148

자료: UNCTAD 국가별 외국인투자실적 2013

- 2011년 아르헨티나로 유입된 FDI는 약 15억달러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 및 사회간접자본(인프라)임
  - 석유·가스·광업(추출활동) 33%, 사회간접자본 31%, 제조업 22%, 유통·서비스 13% 순으로 투자가 이뤄짐
-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아르헨티나의 식량자원을 이용한 식음료와 자동차 산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음

9) UNCTAD, 아르헨티나 통계청, 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향후 아르헨티나 광산 및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 및 광물산업의 수출 대금을 아르헨티나 국내 금융기관에서만 결제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표 I -7〉 對아르헨티나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증가율
전체 업종	33,451	100	28,228	100	-15.6
광업(원유)	18,098	54.1	17,882	63.3	-1.2
서비스	5,555	16.6	3,516	12.5	-36.7
제조업	4,412	13.2	3,146	11.1	-28.7
에너지·가스	2,268	6.8	1,207	4.3	-46.8
건설	1,458	4.4	1,382	4.9	-5.2
금융업	929	2.8	904	3.2	-2.7
농목축업	732	2.2	192	0.7	-73.7

주: 2012년 12월 기준  
 자료: 아르헨티나 투자진흥청(ProsperAr)

- 2011년 아르헨티나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약 14억 8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35% 정도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인 증가임

〈표 I -8〉 아르헨티나의 연간 외국인 투자 실적

(단위: 백만달러)

구분		1996-2004	2006-2007	2008	2009	2010	2011
FDI 총액	연간	1,269	1,751	1,391	719	965	1,488
	누적	-	-	28,789	29,445	29,841	31,329

자료: UNCTAD 국가별 외국인 투자실적 2013

- 아르헨티나에 투자하는 주요 국가는 스페인, 브라질, 캐나다이며, 석유화학·통신·은행 분야의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주를 이룸

- 2009년 스페인의 다국적기업이 105억달러를 투자하여 총투자액의 약 47%를 차지하였고, 브라질이 총투자액의 23%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음

〈표 I-9〉 국가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가	투자		증가율
		2009	2010	
	총액	80,144	88,249	10.1
1	스페인	22,597	23,242	2.9
2	미국	14,012	14,814	5.7
3	네덜란드	6,873	7,328	6.6
4	브라질	4,319	5,367	24.3
5	칠레	4,363	5,509	26.3
6	독일	2,586	2,940	13.7
7	룩셈부르크	2,656	2,704	1.8
8	우루과이	2,578	2,750	6.7
9	캐나다	2,415	2,128	-11.9
10	스위스	2,293	2,900	26.5

주: 2012년 12월 기준

자료: IMF,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투자는 2012년 12월 누적 기준 약 1억 8,153만달러로 주로 수산업, 농업, 전자업, 광업 위주의 투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전자업과 광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경향임
  - 우리나라 업체들의 전자제품 및 휴대폰 단말기 현지 생산량이 증가할 계획이며, 리튬, 석유 및 가스 등의 자원 공동 개발 사업에 착수함
- 양국 간 투자관계는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對아르헨티나 투자로 이루어져 왔음
  - 1980~2010년 누계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투자 신고건수는 총141건이며, 투자금액은 1억 8,153만달러, 신고 법인 수는 53개임
  - 송금 기준 투자건수는 368건, 신고금액(공동투자, 증액투자 포함)은 4억 5,403만달

러임

〈표 I-10〉 최근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투자 현황<sup>1)</sup>

(단위: 건, 개, 천달러)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8년	5	3	21,130	7	7,238
2009년	3	1	674	8	2,734
2010년	7	0	4,061	6	2,031
2011년	3	3	21,060	11	14,887
2012년	3	0	544	5	2,840

주: 1) 현지법인 기준(지점, 지사 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외국인투자 총액은 감소하였으나 최근 아르헨티나의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임

〈표 I-11〉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업종별 투자 현황<sup>1)</sup>

(단위: 천달러, 건)

누적 순위	투자 업종	1982~2012년(누적)	
		투자금액	신고건수
1	광업	73,153	56
2	도매 및 소매업	63,625	36
3	농림어업	29,434	38
4	제조업	13,256	2
5	건설업	1,805	7
	기타	255	2
	총 계	181,528	141

주: 1) 현지법인 기준(지점, 지사 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아르헨티나는 1989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대우를 법제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시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친노조 편향의 정부 정책으로 제조

업 부문의 투자는 고갈되고 있는 상황임

-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국인투자 규제와 외환 규제 강화 조치 등 투자 유인이 줄어들면서 투자유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외국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와 복잡한 조세제도로 인해 사업하기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됨
- 중남미경제위원회(CEPAL)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중남미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FDI) 랭킹에서 아르헨티나는 6위로 중위권에 머무름
  - 2011년 상반기 FDI가 34억 4,7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2012년 같은 기간에 24억 600만달러로 30.2% 감소함

### 3.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의 교역 관계

- 2012년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은 약 9억 7천만달러, 수입은 약 14억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은 9.9% 감소했고 수입은 36.2% 증가함
- 2012년 수입액은 36.2%로 크게 증가했으나 반대로 수출액은 감소하여 3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강력한 수입규제와 경제성장률 둔화 때문임
- 반면 2010년에는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에서 회복한 아르헨티나의 구매력 증가로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은 사상 최고액인 9억 9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83.9%나 증가했음
  - 2011년에는 수출이 18.8% 상승한 10억 8천만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이 31.8% 증가한 10억 4천만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대비 감소함

〈표 I-12〉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578 (18.2)	494 (-14.5)	909 (83.9)	1,081 (18.8)	972 (-9.9)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915 (25.0)	672 (-26.5)	795 (18.1)	1,048 (31.8)	1,428 (36.2)
무역수지	-337	-178	114	33	-456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전자제품 부품, 폴리에스테르수지 등의 공산품임  
 ○ 특히, 기타건설중장비는 2011년 대비 2012년에 88% 증가하여 신규로 주요 10대 품목으로 기록됨

〈표 I-13〉 최근 對아르헨티나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계	1,080,645	18.8	총계	972,906	-10.0
1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자동차	178,323	74.7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자동차	243,449	36.5
2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89,079	-4.8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65,257	-26.7
3	컬러 TV 부품	63,437	108.1	액정디바이스	58,549	5.3
4	폴리에스테르수지	59,396	46.4	코드분할식전화기	38,514	24.09
5	액정디바이스	55,588	-31.4	컬러 TV 부품	30,163	-52.4
6	불꽃점화식내연기관	38,359	133.7	폴리에스테르수지	28,352	-52.3
7	자동차부품	33,810	66.6	자동차부품	28,302	-16.3
8	압축점화식 2,500cc이하	31,500	-33.5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	26,673	37.1
9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	19,456	100.7	불꽃점화식내연기관	23,333	-39.2
10	화물자동차	18,596	-34.8	기타건설중장비	17,867	88.4

주: MII 6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동광, 대두유, 박류, 은, 옥수수, 어류 등의 농산물 및 자원 류임

○ 특히, 사료의 경우 2011년 수입량이 17,000달러인 데 비해 2012년 수입량이 약 3억 백달러로 약 180만배 급증함

○ 사료 이외에도 옥수수, 땅콩, 기타 식물성유지 등 농산물의 수입 증가세가 뚜렷함

〈표 I-14〉 최근 對아르헨티나 10대 수입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계	1,048,086	31.9	총계	1,427,857	36.2
1	동광	418,654	78.5	동광	395,276	-5.6
2	대두유	303,350	28.3	대두유	334,655	10.3
3	박류	188,317	43.3	사료	309,277	1,865,262.8
4	은	54,385	148.9	박류	220,428	17.1
5	기타어류	21,253	8.0	은	65,989	21.3
6	무계목강관	10,342	101.2	기타어류	24,656	16
7	잎담배	7,596	128.0	옥수수	19,824	1,642.6
8	기타식물성유지	6,139	122.5	기타식물성유지	9,810	59.8
9	기타주철	3,078	290.1	잎담배	7,010	-7.7
10	의약품	2,822	6.5	땅콩	4,490	198.2

주: MTI 6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4. 아르헨티나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 가. 아르헨티나의 자유무역협정

- 아르헨티나의 자유무역협정은 남미공동시장(이하 MERCOSUR)<sup>10)</sup> 회원국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뤄짐
  - MERCOSUR 회원국은 역내 통합 강화를 목적으로 중남미 우호국을 중심으로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 MERCOSUR 5개국은 남미 전체 인구의 70%, GDP의 83.2%, 국토 면적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남미권에서의 영향력이 큼
  - 인구는 2억 7천만명이며,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3조 3천억달러, 국가 면적은 1,270만km<sup>2</sup>에 달함
  - 1991년 출범 당시 MERCOSUR 회원국 간의 역내 교역액은 연간 70억달러 수준이었지만, 1995년에는 158억달러로 급증했으며 2010년에는 445억 5천만달러까지 증가해 15년 사이에 2.82배가 성장함
  
-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으로 역내 무역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새로운 가입국인 베네수엘라는 메르코수르의 해상무역 확대를 위한 대서양 항구를 건설하는 등 무역공조가 강화될 예정임
  
- MERCOSUR는 중남미 및 이스라엘 등 6개 국가와 경제보완협정, 인도 및 아프리카 5개국과 특혜관세협정, 안데안(ANDEAN)<sup>11)</sup>과 이집트와는 FTA를 체결함
  - 그 외 EU, GCC<sup>12)</sup> 등 국가와 FTA 협상중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뉴질랜드

10)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만든 남미공동시장으로 1991년 출범, 역내 무관세와 역외 공동관세 시행하며 2012년 7월 31일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해 현재는 5개국이 참가하고 있음

11)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4개국 [www.comunidadandina.org](http://www.comunidadandina.org) 참조

12)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간 체결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드, 터키와는 FTA를 검토하고 있음

- MERCOSUR는 출범 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양국 간 상품의 90%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즉시 철폐, 4년, 8년, 10년 후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음
- MERCOSUR-SACU의 PTA는 2008년 7월에 1,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협정 체결을 승인함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은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등 아프리카 5개국이 참가함
- 2010년에는 이집트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이집트로의 자국산 농축산물, 자동차 부품 및 의약품 등의 수출이 증가함

〈표 I-15〉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구분	단계	내용	비고
MERCOSUR 공동	기체결	경제보완협정: 볼리비아(1996), 칠레(1996), 멕시코(2002), 쿠바(2006), 이스라엘(2007), 페루(2003) 특혜관세협정: 인도(2004), SACU(2008) FTA: 안데안공동시장(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2003), 이집트(2010)	특정 분야에 혜택 적용
	협상중	FTA: EU, GCC, FTAA, 모로코, 요르단	-
	검토중	FTA: CARICOM, 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세안, 뉴질랜드, 터키, 인도-SACU	-
아르헨티나	기체결	경제보완협정: 멕시코(2006) 부문별협정: 멕시코 자동차·유제품(2004)	4,500개 품목관세 인하

자료: 외교통상부, 『FTA 정책집』

- MERCOSUR와 EU는 5차에 걸쳐 FTA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타결되지 못함
  - 1995년 FTA 협상을 시작하여, 협상안 타결 시한으로 정한 2004년이 되었으나 1차 타결에 실패함
  - 가장 최근의 2011년 우루과이에서 7차 협상안도 진척 없이 종료됨
  - 2010년 5월 17일 개최된 라틴아메리카-EU 정상회의에서 MERCOSUR 및 EU 회원국 정상들은 조속한 FTA 재개에 합의하고 2011년 6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제5차 협상까지 진행하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됨
  
- MERCOSUR와 EU 간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쟁점은 농업 개방과 서비스·자동차 시장에 대한 것임
  - MERCOSUR는 EU시장에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EU는 MERCOSUR 내에서 유럽산 자동차의 시장접근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음

〈표 I-16〉 MERCOSUR-EU 협상 주요 쟁점 사항

구분	쟁점사항	협상내용
MERCOSUR	농산물 개방 농산물 보조금 지급	EU, 농산물 수입쿼터 확대 제안 (쇠고기, 닭고기, 옥수수, 에탄올 등)
EU	자동차 시장 개방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메르코수르, 향후 18개월간 수입관세 점진적 인하 제안

자료: KOTRA<국가정보>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 나. 우리나라와 FTA 추진 동향

-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회원국으로 시장규모, 풍부한 자원, 중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중요한 지역경제 통합체임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MERCOSUR와 무역협정(Trade Agreement)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음

- 4차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긍정적 경제적 영향과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등에 대해 검토함

〈표 I-17〉 한·MERCOSUR FTA 추진경과

날짜	협상 추진경과
2004년 11월	대통령 남미 순방 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5년 5월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파라과이)
2005년 8월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2006년 3월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3차 회의(아르헨티나)
2006년 10월~11월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4차 회의(브라질)
2007년 10월	한·MERCOSUR TA 공동연구 결과 발표회(몬테비데오)
2009년 7월	한·MERCOSUR 간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공동협약체 설립 양해각서(MOU) 서명

자료: 외교통상부, 『FTA 공동연구 보고서』

- 하지만 MERCOSUR의 FTA 체결 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로 매우 제한적인 점과 내부 의견 조율의 장기화 등의 이유로 FTA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역내산업 보호, 서비스시장 개방 억제 등 다양한 이유로 완전한 FTA가 아닌 좁은 범위의 특혜무역협정의 성격이 강함
  - EU와의 협상사례처럼 역내산업 피해 최소화와 동시에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협상 조건은 양국의 합의 과정이 장기적이고 어려울 것임을 보여줌<sup>13)</sup>
-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공동협약체 설립 양해각서(2009)를 체결하는 등 양측 간 FTA 추진 여건 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5. 아르헨티나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추진 현황

- 아르헨티나의 AEO 유사 프로그램은 SAOC(Sistema Aduanero de Operadores Confiables)로 2007년부터 시행함
  - 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과 함께 남미지역 최초로 AEO 제도를 시행함
  
- SAOC 프로그램은 국제규범(SAFE FRAMEWORK)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위기관리 부서 신설을 통해 국제무역의 안전화와 원활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
  - SAOC 프로그램은 2005년에 설계하기 시작하여 2007년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개발을 통한 행정력 강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2005년 6월 WCO(국제관세기구)에서 AEO를 국제규범(SAFE FRAMEWORK)으로 선정했고 현재 48개국에서 채택했으며 159개국이 채택 의향서를 제출하고 있는 국제 무역안전을 위한 장치임

〈표 I-18〉 SAOC 프로그램 발전 현황

시기	내용
2005년 6월	WCO의 SAFE Framework 발표 후, 아르헨티나 관세총국 AEO 설계 시작
2005년 11월	안전컨테이너제도 시행을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항구는 중남미 최초의 안전항으로 인증
2006년 2월	관세총국에 위험관리부서를 신설
2006년 8월	관세총국의 AEO 프로그램 법령(제37/2006호)발표
2007년 11월	SAOC 시행(일반법2350호)
2008년 7월	AEO 프로그램 법령(제48/2008)으로 중소기업으로 확장해서 적용
2008년 12월	SAOC 시행을 위한 자동화정보시스템 개발

자료: 연방조세청(AFIP) Prgorama de OEA(SAOC)

- 아르헨티나 관세 총국의 관리하에 있는 위기관리부서는 환경 및 건강안전에 유해 잠재성을 가진 물품에 대한 위험도 분석이 가능한 위기관리 전문가를 지원함
  - 저작권 침해 물품, 마약 밀매, 모조품에 대해 최신 기술력을 가지고 SAOC 프로그램

을 통한 안전관리를 함

-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우선적으로 MRA<sup>14)</sup>를 추진해야 할 나라로 꼽힐만큼 관세 행정 협력에 있어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임
-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MRA를 맺어 세계 3 번째 체결국가임

---

14)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공인업체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 협정

##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4」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명으로 발표하고 있음
- 2013년에 발간된 「Doing Business 2014」은 2013년 한 해 동안 189개국에 대하여 부문 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이 수록됨
  - Doing Business 2014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짓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 수신(Getting electricity), 부동산 취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청산(Resolving insolvency) 등 10개의 지표임
  -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에 있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7위에 올랐음
- 당해 보고서상 무역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일이 짧을 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 무역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과 같이 3위에 오름

〈표 II-1〉 「Doing Business 2013」 아르헨티나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구분	아르헨티나	중남미 (평균)	OECD (평균)	콜롬비아	멕시코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6	6	4	4	4	3
수출소요시간(일)	12	17	11	14	11	8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1,650	1,283	1,070	2,355	1,450	670
수입필요서류(개수)	8	7	4	6	4	3
수입소요시간(일)	30	19	10	13	11	7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2,260	1,676	1,090	2,830	1,740	695
무역분야 순위	129	88	-	94	59	3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 「Doing Business 2014」에서 아르헨티나는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에 있어 전체 조사국인 189개국 중 126위에 올랐으며, 부문별 주요 지표 중 무역분야(Trading Across Borders)에서는 129위를 기록함

○ 지난 해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3」에서는 종합적 사업의 용이성 순위 121위, 무역 분야 순위 134위에 올랐음

〈표 II-2〉 아르헨티나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표

(단위: 일, 달러)

구분	수출		수입	
	소요기간	비용	소요기간	비용
서류준비	6	450	22	610
세관통관	2	150	3	400
항만(터미널)	2	550	3	800
내륙운송	3	500	2	450
합계	13	1,650	30	2,260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Economy Profile: Argentina」

- 아르헨티나에서의 해상 수출에 있어 컨테이너당<sup>15)</sup> 약 1,65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7가지이고, 서류준비를 비롯하여 수출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 수출에 총 13일이 소요됨
  
- 아르헨티나로 해상 수입 시 컨테이너당 약 2,26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10가지, 서류준비를 포함한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를 포함하여 총 30일이 걸림

〈표 II-3〉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시 필요 서류

수출 시 필요서류	수입 시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ll of Lading(선하증권)</li> <li>○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li> <li>○ Customs export declaration(수출신고서)</li> <li>○ Packing list(포장명세서)</li> <li>○ Tax Certificate(세금인증서)</li> <li>○ Terminal handling receipts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ll of Lading(선하증권)</li> <li>○ Commercial invoice(포장명세서)</li> <li>○ Customs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서)</li> <li>○ Packing list(포장명세서)</li> <li>○ Secretariat of Interior Commerce form(내부상업신청서)</li> <li>○ Sworn Affidavit of Intention to Import (DJAI:사전수입신고서)</li> <li>○ Technical standard certificate(기술표준증명서)</li> <li>○ Terminal handling receipts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li> </ul>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4, Economy Profile: Argentina」

##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임

15) 20피트 컨테이너(TEU) 만재화물 기준이며, 위험물·군수품 등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산정한 금액임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3년 보고서는 미국의 57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sup>16)</sup>
-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미국의 수출업자 입장에서 작성된 57개 각 국가의 수입정책(Import Policies)과,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s), 지식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등 무역 및 투자 장벽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
- 보고서 중 아르헨티나 무역 개관 부분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29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라는 점, 양국 간 수출입 규모 추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금액에 관해 언급함
- 2012년 미국의 對아르헨티나 무역흑자액은 60억달러로 이는 2011년보다 5.6억달러 증가한 수치임
    - 2012년 미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103억달러, 對아르헨티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44억 달러였음
  - 2011년 미국의 對아르헨티나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2010년도의 112억달러보다 증가한 133억달러로, 미국의 對아르헨티나 투자는 주로 은행업과 제조분야에서 이루어짐

#### 가. 수입 정책(Import policies)

-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이하 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운용하고 있음
- MERCOSUR 회원국들<sup>17)</sup>은 역외 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대외공동관세

16) 2010년부터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CET)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으로 기존의 0~20% 관세율 범위가 35%까지 인상됨

-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제품 등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외공동관세 적용이 면제됨

-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Common Market Council)는 100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35%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함<sup>17)</sup>
  - 기본적으로 MERCOSUR 관세 인상안은 잠정적으로 1년간 적용되나 동 인상건은 2014년 12월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임

#### 나. 수입 규제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자주 시행함
  - 명백한 덤핑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수입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한 물품에 대해 조사 후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음
- 환경에 유해한 품목의 경우 관련 부처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길고 검사 강도가 높은 편임
  - 아르헨티나의 환경관련 인식이 제고되면서 유해폐기물의 생산 및 수입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규의 시행도 강력해짐

#### 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 2011년 3월, 아르헨티나 상원은 정부조달 및 공공 서비스 사업권 제도(법률 제25,551법)를 통과시킴

---

17)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이며 베네수엘라는 2012년 7월부터 완전한 회원국이 됨

18) 인상 품목은 링크 참조 <http://infoleg.gv.ar/infolegInternet/motlen/205000-209999/207701/norma.htm>.

- 실업률 축소 및 내국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에 최초로 거론됨
- 정부조달 및 공공서비스 사업권 제도는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물품이 수입제품과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입찰 경쟁을 하면 아르헨티나 제품을 우선 고려하는 법임
  - 동종 수입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 이상 높지 않을 경우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함
  - 아르헨티나 공공부문의 사무소, 사회안전망기관, 시가 소유한 회사, 공공기관의 법률고문사무소, 주정부공공단체, 세수관련 사설단체 등임
-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대부분 미주 개발은행(IDB)의 회원국 기업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함
  - 2005년 우리나라의 IDB 가입으로 이러한 진입장벽이 없어져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함
- 긴급경제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부조달 시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함
  - 2002년에 긴급경제조치법을 제정했으며 시효를 매년 연장하고 있음

#### 라. 지식재산권

-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는 미약한 수준이며, 2004년에 미국 정부가 작성한 저작권 및 특허권 관련 요주의국가 목록에 아르헨티나도 포함
-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품 중 113개 품목에 대해 GSP 혜택을 중지한 사례도 있음
  - GSP 혜택 중지 이유는 아르헨티나의 로열티 관련법 개정 지연 때문이었으며 2008년에 혜택 중지를 해제함

- 저작권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 협약과 공연 및 음반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관련 법규를 구비함
  - 1999년부터 WIPO와 저작권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집행은 다소 미약한 실정임

#### 마. 투자 장벽

- 아르헨티나는 핵에너지 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 방송 등의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함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 절차는 간소해짐
  - 등록소(Registro de Inversiones de Capitales Extranjeros)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투자가 가능함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유권 제한은 없으며, 이윤 재투자 의무, 내국 기업화 등의 기업 형태의 전환 의무도 없음
  - 그 밖에 내국기업의 주식 취득도 100%까지 가능하며, 금융기관 진출 시에는 현행법에 의해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나, 주식투자에는 사전허가가 필요 없음
- 지사사무소 설치 시 본사의 재무제표 및 타국의 지사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됨
- 차량에 대해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자동차 30%, 트럭 25%이며 제3국에서 생산한 부품은 자동차 40%, 트럭 50%까지만 사용가능함
  -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 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함
-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규모가 2,500km<sup>2</sup> 이상인 상점을 개점할 경우 사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국경지역에서의 토지 취득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Ⅲ. 아르헨티나의 통관환경

### 1. 통관행정 개요

#### 가. 통관행정 조직

-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정식 명칭은 연방 조세청(AFIP, Administracion Federal de Ingresos Publicos)<sup>19)</sup>임
  - 연방조세청(AFIP)은 1997년에 설립되어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산하의 독립적(Autarchic) 기관으로서 내국세와 관세 관련 정책을 집행함<sup>20)</sup>
  
- 연방조세청(AFIP)은 담당 업무에 따라 내국세 총국(DGI), 관세 총국(DGA), 사회보장자원 총국(DGRSS) 등 3개의 총국으로 구성됨
  - 내국세 총국의 주요 기능은 내국세의 집행, 징수 및 통제임
  - 관세 총국은 수출입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징수, 국제 무역의 통제 및 화물 검사 등의 업무를 관할함
  - 사회자원보장 총국은 사회보장을 위한 지원에 투입되는 자원의 징수 및 통제 역할을 하는 조직임
  
- 관세 총국의(DGA) 모태는 수입 총국(Direccion General de Rentas)으로 1877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명칭 변경 후 현재의 관세 총국으로 정립되었음
  - 아르헨티나 세관은 스페인 식민시대부터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국가기관 중 가장 역사가 긴 정부 조직 중 하나임

---

19) [www.afip.gov.ar](http://www.afip.gov.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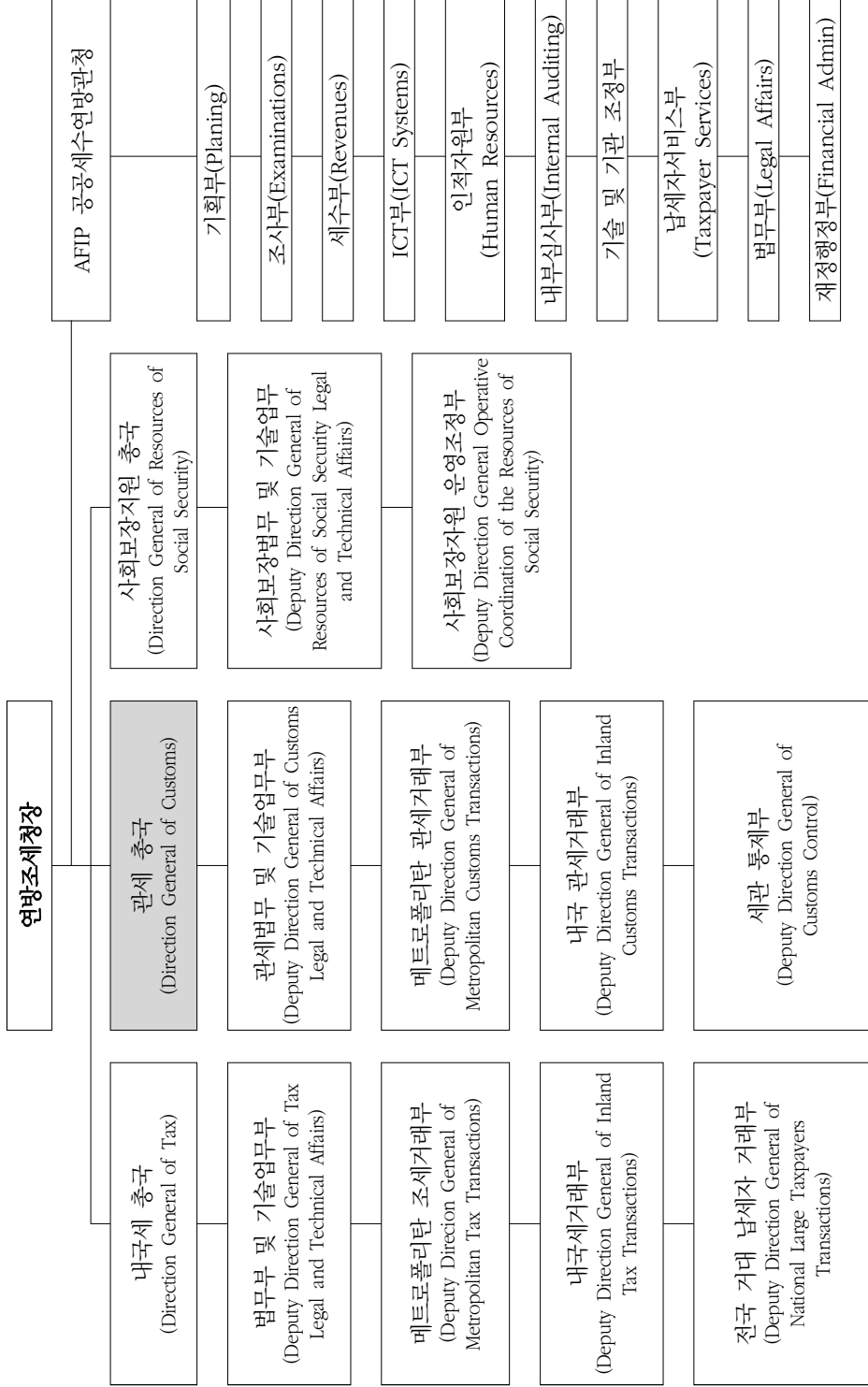
20) 법령 618호에 법적 근거를 둠

- 1877년 세관의 공식 명칭은 수입 총국(Direccion General de Rentas)이었음
  - 1931년에는 관세 총국(Direccion General de Aduanas)
  - 1947년에는 관세항만행정부(Administracion General de Aduanas y Puertos)
  - 1949년에는 관세청(Direccion Nacional de Aduanas)
  - 1963년 관세부(Aduanas de la Nacion)
  - 1969년 관세행정부(Administracion Nacional de Aduanas)
  -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세 총국(Direccion General de Aduanas)임
- 관세 총국(DGA)은 관세법무 및 기술업무부(Tecnico Legal Aduanero), 메트로폴리탄 관세거래부(Operaciones Aduaneras Metropolitanas), 내국 관세거래부(Operaciones Aduaneras del Interior), 세관 통제부(Control Aduanero) 등 총 4개 부서로 구성됨
- 관세법무 및 기술업무부는 관세관련 각종 법무와 행정예 필요한 시스템 등의 기술 업무를 담당함
  - 메트로폴리탄 관세거래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세관과 에쎬이싸(Ezeiza) 세관을 운용함
  - 내국 관세거래부는 물품 검사 및 조사 업무와 함께 9개의 지역세관을 관리함
    - 해당 지역 세관은 Posadas, Mendoza, Cordoba, Rosario, Rivadavia, La Plata, Salta, BA, Blanca, Resistencia이며 그 중 Mendoza 세관은 아르헨티나의 경제개방이 시작되던 1812년을 기념하여 생긴 세관임
  - 세관 통제부는 위험관리와 조사 물품 검사 업무를 담당함
- 아르헨티나 지역 세관은 총 80개<sup>21)</sup>이며, 9개의 면세 지역<sup>22)</sup>이 존재함
- 주요 세관은 Buenos Aires, Barriloché, Campanas, Cordoba 등이며 면세지역은 San Luis, Mendoza, Misiones 등임
- 연방조세청(AFIP)은 관세 및 사회보장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연구소의 자문

21) <http://www.afip.gob.ar/aduana/boletines/boletines/1999/10imp-export.htm>

22) <http://www.afip.gob.ar/aduana/zonasFrancas.asp>

[그림 Ⅲ -1] 아르헨티나 연방조세청(AFIP) 조직도



자료: 아르헨티나 연방조세청(AFIP) 홈페이지 조직도(Organigrama)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연간 계획서에 대한 본 기관의 성과도를 조사·평가함

## 나. 주요 통관제도

### 1)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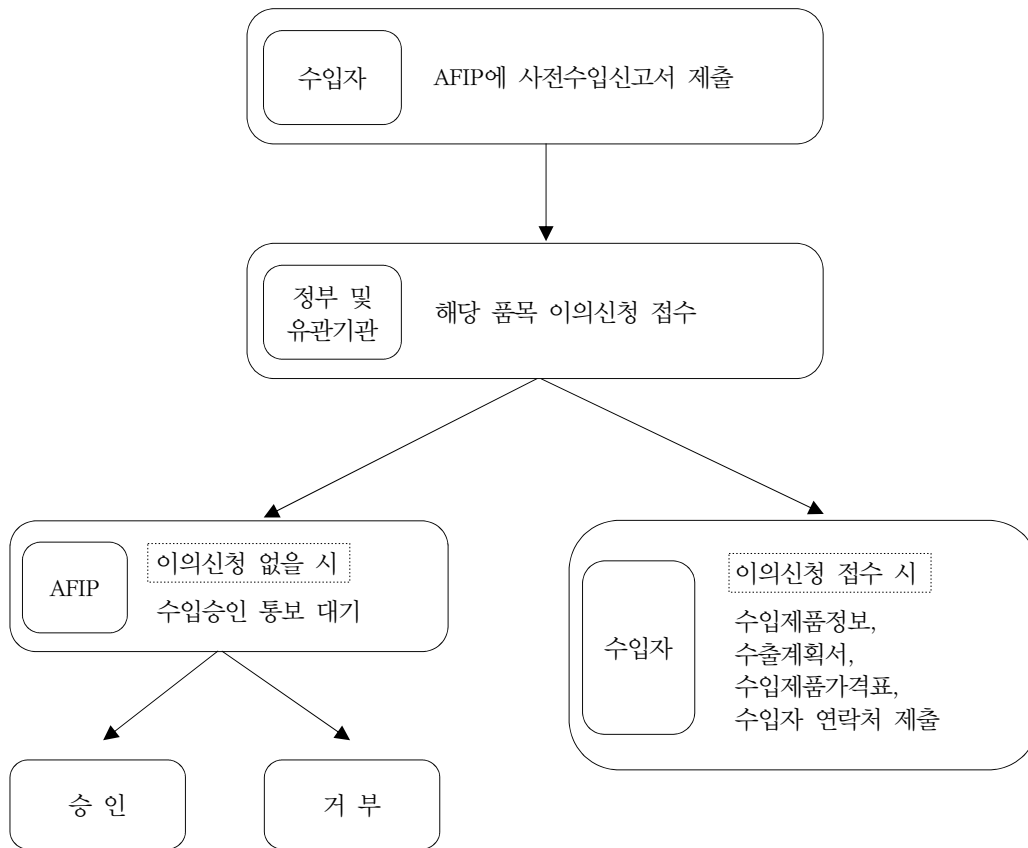
- 사전수입신고제도란 물품이 아르헨티나로 수입되기 전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적용됨
  - 2012년 1월 공포한 행정령 제3252호에 근거하며, 수입자는 의무적으로 수입 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사전수입신고제도의 시행 목적은 수입 규제를 강화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며,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함임<sup>23)</sup>
  - 아르헨티나의 여러 가지 수입규제에도 무역수지 흑자폭이 개선되지 않아 동 제도를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됨
- 사전수입신고서를 등록하기 위해 연방조세청(AFIP)과 산업부 산하 교역청(SCI)에 신고서를 사전 제출해야 하며 검토 후 승인이 되면 통관 절차가 시작됨
  - 제출 서류는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증(CUIT)<sup>24)</sup>, 상호, 관세사의 사업자등록증, 외국환, 제품사양서, 단가, FOB 총액, HS 코드번호, 거래단위, 물량, 원산지, 경유지, 제품상태, 인코텀즈(Incoterms), 선적 및 도착 예정일 등의 정보임
  - 제출한 서류의 검토 중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수입이 불가함
- 사전수입신고제도는 수입이 가능한 경우 승인 처리되며,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 거부 사항을 통지함

23) KOTRA 아르헨티나 무역관<국가정보>사전수입신고제도

24) Clave Unica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 수입이 가능한지 불허한지 판별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임
- 통지사항이 없다면 허가 처리된 것이며, 거부 시에는 수입신고 불가 연락을 하며, 서류가 불충분할 때는 서류를 추가 요청함

[그림 Ⅲ-2] 사전수입신고 절차



자료: 연방조세청(AFIP) 사전수입신고 절차(Proceso de DJAI) 인용

- 아르헨티나 수입업자협회(CIRA)에 통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에 4억 3,800만달러 상당의 신고서 3,228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30만달러 상당의 신고서 446건만 통과됨
- 신고건수 기준 약 14%만이 수입이 허가되는 등 현지에서 수입하는 대부분 기업들의 물품반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제도는 사실상의 무역규제조치로 2012년 개최된 WTO 상품교역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EU, 우리나라 등 13개국은 이 제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사전수입신고제(DJAI)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으며 대외무역에서 타국가들의 무역 보복조치를 일으키고 있음
  - 2012년 5월 기준 시행중인 보호무역조치 항목은 191개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규제 강도가 매우 높음

〈표 Ⅲ-1〉 사전수입신고제도 주요 조항

1. 하기 사항은 사전수입신고 제외: 재수입, 견본, 기부, 선적 불량 물품 보상분, 정부 허가 독점사업권, 외교적 면세물품(외교 행낭), 택배 및 우편물, 1.31일까지 수입 승인을 득한 선적 및 터키방식 플랜트 수입
2. 요구자료: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증(CUIT), 상호, 관세사의 사업자등록증(CUIT), 외국환, 제품사양서, 단가, FOB총액, HS코드번호, 거래단위, 물량, 원산지, 경유지, 제품상태, 인코텀즈(inconterms), 선적 및 도착 예정일
3. 수입신고자료에 대한 오차 범위는 FOB 가격의 경우 5% 이내이며, 물량의 경우는 신고 물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5%까지는 신고 물량보다 적은 것을 허용함.
4. 신고서는 구입 주문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고 신고서는 180일간 유효하며 효력의 연장이 가능함.
5. 수입신고서는 양도가 불가하고 허가 받은 수입업자만이 신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
6. 동일 수입 도착지에서 여러 개의 사전수입신고서도 사용가능하며, 한 개의 수입신고서로 여러 개의 선적물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함.
7. 사전수입신고서가 접수된 후 승인검토는 10일 이내에 이뤄지며(연방조세청인 AFIP내에서 72시간 이내, 기타 관련기관에서 그 외 기간 소요.) 동 기간 동안에 지적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수입승인이 이루어짐.
8. 승인 여부는 수입자와 관세사에게 아르헨티나 연방조세청(AFIP) 웹페이지를 통해서 통보됨.
9. 수입업자는 이 신고서 제출과 더불어 각 수입 건에 대해서 산업부 산하 교역청(Secretaria de Comercio Interior)에도 별도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동 요청서 내용은 사전 수입 신고서에서 요청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함.

자료: 아르헨티나 연방조세청(AFIP) 및 교역청(SCI), 외교통상부

2)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nomica)<sup>25)</sup> 일부 폐지

- 아르헨티나 수입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2월 도입되어 약 600개 품목에 대해 수입 시 연방조세청과 관련 정부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도임

25) Ley N 24.425, <http://www.comercio.gov.ar/web/index.php?pag=93>, 부록 참조

- 사전수입신고제도가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수입허가제는 일부 품목에 2차적으로 적용되는 수입규제 정책임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600개 품목이 아닌 약 400여개 수입품목에만 수입허가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 수입허가제에서 해제된 품목은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타이어, 오토바이, 섬유·의류, 신발 등 약 200개 품목임
- 목재 가구류, 농기계류, 트랙터·에어컨 등 기존의 200여개 제품과 추가적으로 선정된 금속제품, 전자제품, 원사 및 원단, 고급승용차, 주형 및 틀 등 200여개 제품은 여전히 수입허가 대상 품목임
- 수입허가 획득 절차는 경제공공재정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ublicas)에서 서류를 받아 산업부(Ministerio de Industria)에 수입허가 서류를 신청함
  - 절차는 ① <http://www.comercio.gob.ar/web/index.php?pag=98&btn=161>에 접속한 뒤 → ② 수입되는 품목 선택 → ③ 프로그램 설치 후 신청서류 다운 → ④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수입허가 신청서류에는 수입자명, 수출자명, 수입할 품목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함
  - 수입자명(Datos del Importador)에는 업체명, 산업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함
  - 수출자명(Datos del Exportador)에는 업체명, 주소, 국적 정보를 기록함
  - 수입할 품목에 대한 정보(Informacion sobre la Mercaderia a Importar)는 상표, 모델, HS 코드, 구매가격이 필요함
  - 단위별 FOB와 총FOB 가격은 수입국 화폐와 미국 달러 모두 가격을 기재해야 함
  - 물량은 Cantidad en Unidades로 표시되며, 무게는 Cantidad en Kilogramos로 표기됨

- 그 외 수입대상국과 원산지를 기록해야 함
- 서류 제출 후 수입허가까지 약 60일이 소요됨
  - 서류 양식을 채운 후 산업청 11, 12 부서(Sector)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시 개인 또는 회사 등록증을 함께 제출함

[그림 Ⅲ-3] 품목별 수입허가(LNA) 신청처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downloading programs for import permit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DNGCE - DI - Descargar Programas' and 'Programas para descargar'. It lists several product categories with links to download programs:

- Productos Metalurgicos** (Autoextraible en C:\instala\_lic) - Link: [certoipm40311.zip](#)
- Hilados y Tejidos** (Autoextraible en C:\instala\_lic) - Link: [CERTCIHT40311.ZIP](#)
- Importación de Motos Res. 689/2006** (Autoextraible en C:\instala\_lic) - Link: [certCIM250411.zip](#)
- Cámaras y Cubiertas Res. 694/2006** (Autoextraible en C:\instala\_lic) - Link: [Sistema Sisco](#)
- DJCP** (Autoextraible en A-\*) - Link: [DJCP.zip \(543kb\)](#)
- Papel** (Autoextraible en A-\*) - Links: [papel\\_disk1.exe \( 1.31 MB \)](#), [papel\\_disk2.exe \( 1.07 MB \)](#), [papel\\_disk3.exe \( 1.01 MB \)](#)
- Bicicletas** - Link: [CERTBIC200009.exe 2.2Mb](#)
- Calzado (versión 1.0)** - Link: [Sistema Sisco](#)
- CIAH** (Autoextraible en C:\instala\_lic) - Link: [CERTCIAH270411.zip](#)
- Juguetes (versión 1.0)** - Link: [Sistema Sisco](#)
- Requisitos de seguridad para neumáticos de bicicletas (CCR5) Res7/05.** (Autoextraible en C:\instala\_lic) - Link: [Sistema Sisco](#)

On the right side of the screenshot, there is a vertical label '품목표시' (Product Marking) with arrows pointing to the 'Papel', 'Bicicletas', and 'Juguetes' categories.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홈페이지(MECON)

### 3) 최저수입가격제도

- 아르헨티나의 수입가격 모니터링제(REDI)에 따라, 2005년 8월 30일부터 아르헨티나 관세청이 고시하는 품목은 최저기준가격이 적용됨<sup>26)</sup>
  - 연방조세청(AFIP) General Resolution 1907/2005, 1908/2005를 법적 근거로 둠
  
- 최저수입가격제도는 A라는 품목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공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수출국 현지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뒤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임
  - 만약 한국의 업체가 아르헨티나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수입가격제도가 적용된 A라는 물품을 공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다면 한국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아르헨티나 세관에 제출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되는 품목은 약 24,000개임
  - 최근 가전제품, 섬유류, 타이어, 모터사이클 부품 등이 추가됨
  
- 관보 공고내용<sup>27)</sup>에 따라 주요 검사대상 품목의 HS 코드는 총 75개임
  - 36류부터 96류까지임
    - 3605, 3919, 3920, 3924,
    - 4011, 4202,
    - 5206, 5208, 5209, 5210, 5211, 5402, 5407, 5513, 5515, 5801,
    - 6001, 6006, 6101, 6108, 6109, 6110, 6111, 6201/9, 6211/5, 6402/6, 6907/11
    - 7020, 7306, 7307, 7321, 7610,
    - 8203, 8205,
    - 8301, 8302,

26) 아르헨티나 관보 No.31,227호

27) <http://www.infoleg.gov.ar/infolegInternet/buscarNormas.do>

- 8414/5, 8450, 8470/1, 8477, 8481/2,
- 8507/9, 8516/9, 8523, 8527, 8534, 8536, 8544,
- 8708, 8711/2, 8714/5,
- 9003/4, 9006, 9017, 9021, 9202, 9401, 9403, 9503/7, 9613, 9617

- 만약 신고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해야 함
  - 세관에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은 현금, 은행 담보 및 공공채권만 가능함
- 수입물품의 FOB 가격이 고시한 최저수입가격의 80% 이하인 경우 세금 인상과 세금의 유예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는 최대 21%까지, 소득세는 최대 11%까지 상향하여 부과함
- 아르헨티나 Infoleg 사이트를 통해서 전체 국가에 따른 품목별 최저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
  - ① <http://www.infoleg.gov.ar/infolegInternet/buscarNormas.do> 접속 → ② Tipo de Norma에서 Nota Externa 선택 → ③ Numero 58 선택(Ano는 연도를 의미함) → ④ 하단의 Buscar 버튼을 클릭하면
  - 리스트의 'Origen'에서 한국은 GR4, GR8, GR12, GR17, GR20, GR22로 표기됨

#### 4)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 아르헨티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며,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음을 규정함
- MERCOSUR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역내제품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면제받는데, 이때 관세의 면제는 물품의 부품의 60% 이상이 역내에서 제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는 對아르헨티나 수출 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함

5) 지정세관 제도<sup>28)</sup>

- 아르헨티나는 2008년 8월부터 품목별로 수입하는 세관을 지정하여 수입품목에 따라 지정된 세관으로만 통관할 수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정세관 제도를 통해 상품 수입과 관련한 자료 분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
- 하지만, 실질적으로 품목별 최저수입가격 설정과 안전검사기준 확대에 따라 수입통관 세관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sup>29)</sup>
- 지정된 세관은 품목에 따라 달라지나, 80개 세관 중 주요 항구 15곳 내외에서 결정됨
  -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Santa Fe, Puerto Madryn 세관 등이 있음

---

28) <http://www.infoleg.gov.ar/infolegInternet/anexos/130000-134999/131847/norma.htm>

29) KOTRA 아르헨티나 무역관

〈표 III-2〉 NCM(HS) 코드별 지정세관

NCM(HS) 코드	통관 세관
3924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4202, 420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50-60 (5201 제외)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Puerto Iguazu, Bahia Blanca, Santa Fe, Puerto Madryn
64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6911, 6912, 691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701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7117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7321, 732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San Javier
82, 8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Santo Tome
8415, 8418, 8421, 8422, 8450, 8452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Santo Tome
8467, 8470	Buenos Aires, Ezeiza, Cordoba, Mar del Plata
8471, 8473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85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Mar del Plata, Santo Tome
8708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Santo Tome, Villa Constitucion, San Javier, San Luis
8711	Buenos Aires, Ezeiza, Cordoba, Rosario
8712	Buenos Aires, Ezeiza, Rosario
8714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9017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Santo Tome, Mar del Plata
91	Buenos Aires, Ezeiza, Cordoba, Rosario, Campana
9405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Santo Tome, Mar del Plata
9503, 9504, 9505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96	Buenos Aires, Ezeiza, Paso de los Libres, Cordoba, Rosario, Campana

자료: 연방조세청(AFIP) Puerto asignado

## 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Arancel), 통계세(Tasa de Estadística), 부가가치세(IVA), 추가 부가가치세(IVA Adicional), 소득세(Impuesto a las Ganancias),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해야 함

### 1) 관세(Arancel)

#### 가) 관세제도

-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 및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운용하고 있음
  - 1991년 창설된 MERCOSUR는 회원국들 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였으며 현재 역내 교역의 99%가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품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종량세와 종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혼합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 평균관세율은 18%이며, 품목에 따라 5~35% 부과함
- 아르헨티나는 원자재,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 제품일수록 관세가 높음
  - 제품의 부품, 1차 산품, 원료, 중간재 등의 관세율은 12.5% 이하이며 자동차, TV 등은 고관세가 적용됨

〈표 Ⅲ-3〉 아르헨티나 품목별 관세율

관세율	품목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제품 일부(레이더 0%)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
4.5~12.5%	1차 산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12.5~20%	정보통신제품 일부(휴대폰 19%), 일부 화학제품, 일부 소비재
20.5~35%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품목, 자동차(35%), TV(21%) 등

자료: KOTRA 아르헨티나 무역관<국가정보>관세제도, 연방조세청(AFIP)

- 아르헨티나는 1995년 1월 1일부터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MERCOSUR Common Nomenclature, 이하 NCM)를 준용하고 있으며 총 8자리로 구성됨
  - 앞 6자리 숫자는 HS 코드 분류와 동일하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숫자는 MERCOSUR 에서 사용하는 특정번호임
- MERCOSUR 회원국들은 1995년 1월부터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함을 원칙으로함
  - MERCOSUR는 1991년 출범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는 무역장벽까지 전면 없애기로 했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 단계 발전한 ‘관세동맹’으로 역내 무역자유화는 물론이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2013년 1월까지 관세율은 0~20%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었으나 MERCOSUR 회원국 간 의견조율을 통해 현재 회원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 35%까지 부과함
- 하지만 대외공동관세는 일반관세를 대외공동관세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이드라인 관세이므로 실제로 외국 물품이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경우 대외공동관세가 아닌 일반관세가 적용됨
  - 대외공동관세의 경우 4개 회원국 간 품목별 관세율에 대한 의견 조율이 어려워 실제 적용하고 있지는 못하며, 수입되는 품목에는 회원국별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실제 적용하는 관세(일반관세)와 대외공동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 대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고 있음
  -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된다고 공시된 품목은 약 8,500개임
  
- WTO의 국가별 관세율체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31.8%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13.6%임
  -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32.4%, 평균 실행관세율은 10.4%이며 비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31.7%, 평균 실행관세율은 14.1%임

〈표 Ⅲ-4〉 2011년 아르헨티나 관세율체계

(단위: %)

구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1995년 WTO가입
단순평균 양허관세율	31.8	32.4	31.7	농산물할당관세(%): 0 농산물특별긴급관세(%): 0
단순평균 실행관세율	13.6	10.4	14.1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 수입되는 농산물의 약 69%가 10%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수입되는 농산물의 5.9%는 면세, 6.5%는 0~5%, 56.5%는 5~10%의 관세율이 적용됨
  
- 비농산물의 경우 전체 수입품목의 약 55%에 10~25%의 관세율이 적용됨
  - 수입되는 비농산물의 5%는 면세, 14.7%는 0~5%, 55%는 10~25%의 관세율이 적용됨

〈표 Ⅲ-5〉 2011년 수입가격기준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단위: %)

분포	면세	0≤5	5≤10	10≤15	15≤25	25≤50	50≤100	> 100
	관세품목 및 수입가격(비율)							
농산물								
양허관세	0.1	3.9	0.4	0.4	6.8	88.3	0	0
실행관세	5.9	6.5	56.5	15.5	14.7	1.0	0	0
비농산물								
양허관세	0	0.1	0.3	1.4	19.9	78.3	0	0
실행관세	5.0	14.7	11.4	28.4	26.8	13.6	0	0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표 Ⅲ-6〉 아르헨티나 수입품목별 관세율

(단위: %)

품목	WTO 양허세율			실행세율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26.5	0	35	8.9	5.1	16
유제품	35.0	0	35	18.5	0	28
과일, 채소, 식물	33.8	0	35	9.8	5.4	35
커피, 차	34.2	0	35	13.3	0	20
곡물 및 곡물조제품	33.0	0	35	11.8	8.7	20
종유, 지방 및 유지	34.6	0	35	8.0	7.4	12
당류와 설탕과자	33.3	0	35	16.5	0	20
음료 및 담배	35.0	0	35	17.2	0	20
면	35.0	0	35	6.4	0	8
기타 농산물	30.9	0.7	35	7.6	9.7	14
어류 및 어류제품	34.5	0	35	10.0	6.7	16
광물 및 금속	33.8	0	35	10.1	6.3	20
석유	33.6	0	35	0.2	96.7	6
화학제품	21.4	0	35	8.3	0.8	18
목재, 지류 등	30.2	0	35	10.8	2.9	18
직물	34.9	0	35	23.3	0	35
의류	35.0	0	35	35.0	0	35
가죽제품, 신발류 등	35.0	0	35	15.7	0.6	35
기계류	34.9	0	35	12.7	11.8	20
전자기기	34.9	0	35	14.1	10.7	20
이송장비	34.5	0	35	14.5	11.1	20
기타 제품	33.5	0	35	15.3	8.5	20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3

-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의류의 경우 평균실행세율이 35%로 관세 상한선과 일치하며, 석유의 경우 평균실행세율이 0.2%이며 면세비율이 96.7%에 이룸
  - 커피, 차, 당류와 설탕과자, 음료 및 담배, 면류, 직물, 의류는 면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임

#### 나) 관세율 조회처

- 수입품목별 관세율은 아르헨티나 관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아르헨티나 관세청(AFIP) 사이트 접속 → Aduana 클릭 → Arancelintergrado 클릭 → Consulta Arancel Integrado의 Seleccione Capitulo에서 수입하는 품목 선택 → 코드별 관세 조회 가능<sup>30)</sup>
- 품목분류 01류 산동물과 관련제품의 경우 Animales vivos y productos del reino animal을 클릭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음

#### 2) 통계세(Tasa de Estadística)

- 통계세는 아르헨티나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하여 국제무역 주체(수출입업자 및 관세청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임
  - 아르헨티나 관세법(Customs Code) 제22415호 762~766항에 의거함
- 통계세는 종가세 기준이며, 수입품 CIF 가격의 0.5%를 과세함
  - 1994년에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 통합과 개방화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통계세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으나, 1995년에 대통령령 389/95호에 따라 3%로 인상되었다가 현재의 0.5% 세율로 정착함
- 컴퓨터, 전자통신기기, 자본재, 원료, 제지류, 책, 정기간행물, 무기류, 면세품을 제외한

30) <http://www.afip.gov.ar/aduana/arancelintergrado/>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부과됨

- 통계세 징수의 명목인 국제무역에 관련한 통계자료의 제공은 무역 주체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국제 거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임
-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수출입 관련 등록, 전산화작업, 무역 통계에 대한 정보처리 작업 등 관세행정을 위한 원조 작업임
  - 세관은 물품의 가격, 수량, 상세사항, 품질, 물품 분류, 관세 평가 등의 정보를 아르헨티나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and Census Institute 24 of Argentina)으로 전송하며 이는 향후 통계자료로 만들어 출판됨
- 품목과 관계 없이 MERCOSUR 역내 제품, 잠정 수입된 물품, 면세 수입 시는 통계세가 면제됨

### 3)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

- 부가가치세는 아르헨티나에서 물품의 매매 시와 수입 시 과세대상이 되며, 표준세율은 21%임
  - 1995년 이전에는 18%이었으나, 세수 확대를 위해 1995년 5월부터 21%로 인상하였음
  - 수입행위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수입을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임
- 표준세율은 21%이지만 통신, 가스, 전기 및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27%의 할증률을, 자본재, 과일, 채소, 곡물, 육류, 신문, 잡지, 의료, 특정요건을 갖춘 이자 및 수수료는 10.5%의 할인율을 적용함

〈표 Ⅲ-7〉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구분	세율	대상
할증세율	27%	가스, 전기, 상하수도, 통신용역, 휴가목적의 부동산 임대용역 등
경감세율	10.5%	신문, 잡지, 의료, 주택공사용역, 가축의 판매와 수입, 정육, 과일, 콩, 채소, 일정조건의 대출에 대한 이자

자료: 연방조세청(AFIP) 아르헨티나 부가가치세율

- 관광객, 과학자, 기술자, 외교관을 위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그 외 종교단체 등에서 수입하는 재화 중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전본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제공되는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수출용 원자재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됨
  - 수출용 매입 원재료와 수출과 관련 있는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남아 있다면 다른 종류의 국세에서 공제가 가능함
  - 다른 세금에서 공제를 하고도 매입세액이 남아 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은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전월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함

4) 추가 부가가치세(IVA Adicional)

- 추가 부가가치세는 10%로 수입 상품에만 부과되며, 향후 발생할 매출부가가치세에 대한 선납세 개념임
  - 부가가치세법 Res. 3431/91에 법적 근거를 둠

-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추가 부가가치세도 매월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시 매출부가가치세로 공제할 수 있음
  - 단, 매입부가가치세가 매출부가가치세를 초과할 경우 환급은 불가능하며 다음 달로 이월공제만 가능함
-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수입하는 일부 자본재의 경우 5%의 추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음

#### 5) 소득세(Impuesto a las Ganancias)

- 소득세는 주(州)정부세로 영업세라고도 하며, 표준세율은 3%임
  -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평균 3%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사후 정산함
- 소득세는 평균 3%이나 농축산업·광업 등 1차 산업에는 1%, 제조업의 경우 1.5%, 금융·중계업의 경우 5.5% 등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다름

#### 6) 특별소비세(Impuesto Especial de Consumo)

- 자동차, 담배, 주류, 일부 전자제품 등 특정물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부과율은 7~50%까지 다양함
  - 수입 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을 추가로 부과함

〈표 Ⅲ-8〉 아르헨티나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계산 예시

구분		산정 방식
대외세(A)	관세	CIF가격*관세율
	통계세	CIF가격*0.5%
대내세(B)	부가가치세	(CIF+A)*21%(자본재의 경우 10.5%)
	추가부가가치세	(CIF+A)*10%
	소득세(영업세)	(CIF+A)*3%
특별소비세		시장가격*내국세율(주류, 담배, 일부 전자제품 해당)

자료: KOTRA 아르헨티나 무역관>관세제도

### 라. 관세 환급 및 관세법 위반 시 제재

- 관세 환급은 수출촉진을 위한 전통적인 제도의 하나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함
  - 1960년 법령22415호에 근거하여 수입건 별 평가로 시행되어왔으나, 1991년 7월 3일부터 자동 환급제도로 전환함
- 수출업자는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원부자재의 소요 증명을 상공청의 확인을 받은 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관세 환급을 받게 되고, 한번 등록된 후의 반복되는 수출 건의 경우 재등록 없이 자동 확인이 되며, 상공청은 90일 이내에 이를 사후 심사하게 됨
- 관세 환급용 구비서류는 내국세일 경우 선적허가서, 회사설립 인가서, 내국세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등이며, 수출세의 경우 관세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주민증 사본 등임
- 밀수행위는 6개월~12년의 형벌을 부과하고, 5,000달러 미만의 소액 밀수는 2~10배의 벌금을 부과함

- 그 외 밀수를 방조하는 행위,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불성실한 세관신고나 인보이스에 나타나지 않는 상품의 선적 등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함

#### 마. 띠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자유무역지대

- 자유무역지대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제한된 장소이며, 설립 목적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촉진임
  - 자유무역지대는 일부 산업과 상품 활동에 대한 수출 증가 및 교역 확대뿐 아니라 제조업 육성을 산업성장 목표로 세운 아르헨티나가 생산라인이 있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이기도 함
- 아르헨티나 최남단의 Tierra Del Fuego(이하 TDF지역) 특별관세지역은 1972년 제정된 법률 제19640호에 의거해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업체들이 입주함
- TDF 지역은 아르헨티나 최남단에 소재한 주로서 큰 섬으로 된 땅이며, 남극 바로 위에 있어 매우 추운 지역임
  -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쪽으로 2,100Km나 떨어져 있으며, 주도는 우슈아이나(Ushuaia)임
  - 브라질의 오지 지역인 마나우스(Manaus)를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한 것을 모델로 아르헨티나 지역 중 여건상 가장 개발이 어려운 최남단인 TDF를 특별관세지역으로 육성하기로 계획함
- TDF 특별관세지역은 소득세(영업세)만 과세되며, 관세, 부가가치세, 통계세 등은 면제되는 혜택이 있음
  - 관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통계세 면제함
    - 단, 자유무역지대(TDF)에서 단순 포장, 재포장, 분할, 혼합 등의 단순작업된 제품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함

- 소득세 및 자산세 감면함
-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 시 관련세금 환급함
  
- 현재 TDF 지역은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상의 혜택을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함
  - 특히 전자 업체들의 생산라인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가 성장함
  
- 하지만 최남단이라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항만시설이 협소해 수용 용량을 이미 초과하는 등 인프라 시설이 불충분하며 인구 유입에도 한계가 있음
  
- 2012년 6월 아르헨티나 행정부는 TDF 지역의 특별면세정책 철회와 인지세 1.5% 상승을 요구하는 사항을 법안으로 제출하였으나 2013년 3월 현재 변동사항은 없음

#### 바. 주요 인증 제도<sup>31)</sup>

##### 1) 표준인증협회(IRAM) 인증

- IRAM은 아르헨티나 표준인증협회(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이하 IRAM)에서 제정·발행하는 정부 차원의 강제규격임
  - 1937년 법령 Decree No. 97287에 의해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1956년에 규격일치를 인증하는 표시제도가 시행됨
  
- 아르헨티나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 화학, 기계·금속제품 등의 제품은 IRAM 인증을 받아야 함
  - AC50-1000V 및 DC50-1500V에 속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이 IRAM 인증을 받아야 함
  - 보일러, 압력용기의 경우 IRAM의 규격(A.25시리즈) 및 ASME, TRD, AD 사양서 등

---

31) [www.iram.org.ar](http://www.iram.org.ar) 참고

을 적용하여 규격처리가 진행됨

- IRAM 인증은 안전 인증(Safety Mark, ISO No.5), 형식 승인(Type Certification, ISO No.4), 로트별 승인(Lot Certification, ISO No.7)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제조자와 수입업자들은 제품에 따라 인증 종류를 선택할 수 있음
  - 안전 인증은 S마크 승인으로 제품시험 및 공장 품질 시스템 검사를 위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을 취득함
  - 형식 승인은 인증 최초 취득 후 3개월 뒤에 시료 채취 시험을 실시하며 6개월마다 시료 채취를 통해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함
  - 로트(Lot)별 승인은 제품 로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로트 물량에 한해 인증이 유효함
  
-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시험이 있으며 그 외에 IRAM 본부 및 Santa Fe 지점에서 인증이 가능함
  
- 인증 절차는 우선 신청자가 해당기관에 IRAM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IRAM은 ① 신청서 검토 및 평가계획 수립 → ② 품질시스템 평가 → ③ 제품감사 및 시료채취 후 시료검사 → ④ 인증마크가 수여됨
  
- 인증 강제 품목이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통관 금지,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제재 등 각종 처벌이 내려짐
  - 벌금은 500~500,000페소이며 최대 30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 최대 5년까지 국가계약에 제한, 영업상의 각종 권한 박탈 등 피해가 큼
  
- ISO 9000 시리즈 인정기관인 IRAM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상호 인정 협약을 맺고 있으며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 IRAM은 독일의 DQS, 이탈리아의 CERMET, 이탈리아의 IMQ 및 스페인의 AENOR 인증과 상호 인정협정을 맺고 있음

-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는 영국의 BVQI, 네덜란드의 DNV 및 스위스의 SGS-ICS 인증이 유효함

## 2) 산업기술청(INTI) 인증

- 산업기술청(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 이하 INTI) 인증은 완구, 용기, 시멘트, 전기제품, 신발, 포장지, 가스장비 등 제품에 대한 인증임
  - 완구의 경우 완구의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하며, 신발의 경우 각 재료 성분, 제조업체, 상표, 모델에 대한 라벨링 인증을 받아야 함
- INTI 인증 절차는 ① 인증 신청 → ② 평가 → ③ 인증마크 발급 → ④ 사후관리 순임
  - 인증 신청의 단계에서는 제품정보, 검사 목록 등 인증평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평가 단계는 샘플 제출, 검사 실시, 품질관리 검사가 검사소에서 이뤄지며, 인증마크 발급의 단계는 인증위원회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서 혹은 인증마크가 발급됨
  -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제품검사와 품질관리 검사가 시행되며 제품검사의 경우 인증부서에서 공장 또는 시장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품질관리 검사의 경우 ISO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가 이뤄짐
- INTI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품목에 따라 약 5~11개월이 소요됨
  - INTI는 자체 검사소를 가지고 있고, 품목에 따라 제3의 검사소 혹은 검사인에게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음

〈표 Ⅲ-9〉 INTI 인증분야

분야	인증 내용	해당 법률
완구	완구 안정성	결정문 163/2005
용기	뚜껑 등의 재질이 위험한지 등 용기에 대한 인증	결정문 730/199
시멘트	건축용 시멘트에 대한 인증	결정문 130/1992, 240/1992
전기제품	저압에서 사용되는 전기제품에 대한 인증	결정문 92/1998
신발	신발 각 재료 성분, 제조업체, 상표, 모델에 대한 라벨링 인증	결정문 508/1999
포장지	포장용 종이에 대한 라벨링 인증	결정문 653/1999
가스장비	천연가스, LPG 등 모든 유형의 가스기기 및 액세서리에 대한 인증	아르헨티나 가스공사(Enargas)
개인보호장비	개인보호 용도의 장비, 수단 및 부품에 대한 인증	결정문 896/1999
자동차부품	안전관련 자동차부품 및 요소에 대한 형식승인 인증	결정문 91/2001
수입자동차	수입자동차 기술서류에 대한 검사	결정문 64/2001
우박방지용 그물	농작물 보호를 위한 설치조건 및 품질 등에 대한 인증	법률 25174/99, 시행령1552/2001
식품	모든 식품의 품질 및 가공단계에 대한 인증	강제 인증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인증 받음
에너지 라벨링	전기제품이 정해진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인증	결정문 319/1999
자전거	자전거 판매를 위한 안전 인증, 유아용 자전거 안전기준 규정 및 심사	결정문 220/2003, 91/2004
라텍스 페인트	라텍스(latex) 페인트의 납 함유량 검사 및 인증	결정문1088/2004
철강	콘크리트 철근 또는 건축용 철 구조물 사용 시 최저 안전기준 검사 및 인증	결정문 404/1999
라이터	라이터 안전성 검사 및 인증	결정문 77/2004
자전거용 튜브, 타이어	튜브 및 타이어에 대한 최저 안전기준 검사 및 인증	결정문 153/2005
기계·장비	플라스틱·고무 사출기계에 대한 인증	결정문 97/2006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및 부품에 대한 안전 인증	결정문 897/1999
기타 품목	자발적으로 인증 신청할 수 있음	-

자료: INTI

### 3) 식품의약청(ANMAT) 인증

- 식품의약청(Administracio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ia Medica, 이하 ANMAT) 인증은 의료기기 · 의약품 · 식품의 최초 수입 시 필요함
  - 식약청 법령 17/06호에 따름
  
- ANMAT 인증 획득을 위한 제출서류는 제품 카탈로그, 원산지 증명서, 품질 증명서, 생산 절차 설명서 등이며 심사 후 인증이 허가되면 상품 등록 고유번호가 발급됨
  - 제출서류는 해당 의료기기 · 의약품 등의 관세 지불 영수증, 등록 신청법인의 법 · 기술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간 제품보고서 및 사용설명서, 아르헨티나 상품등록청(OAA)에서 인정하는 제품 실험보고서, ANMAT에서 발급한 의료관련 업체 허가서 혹은 정식 생산허가서, 생산업체의 판매허가서임
  
- 인증 획득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며, 비용은 800페소(약 160달러)임
  - 제품 등록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없으며, 최초 인증서 발급 뒤에 향후 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 상품의 등록 고유번호만 증명하면 됨

〈표 Ⅲ-10〉 품목별 인증·허가 필요사항 및 담당기관

대분류	관계기관	세부품목	비고
식품	ANMAT	의약, 식용식품 전반	수입품의 경우 사전 등록 및 수입건별로 수입 허가 필요
	IRAM	통조림, 주스, 치즈, 와인, 차 등	제조우수사례, 농업우수사례 인증
	INTI	식품 전반	식품품질 및 가공공정에 대한 인증
	SENASA	동식물 식품 및 소모품, 농화학 폐기물	아르헨티나 검역청에서 인증보다는 검역관련 관리차원의 검사 실시
의약품	ANMAT	의약품 전반	의약품 사전등록 필요
의료기기	ANMAT	X선 기기,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전반	의료기술국에서 담당
	IRAM		IRAM 표준 4220에 의해 인증
화학	IRAM	PVC 제품, 안전유리 등	IRAM DC PA 001, IRAM DC PA 002, IRAM F 054가 있음
완구	IRAM	완구전반(판매·무료증정용 불문)	완구 안전성 인증(IRAM F 275)
	INTI		완구 안전성 인증
전기전자	IRAM	고·중압기기, 오디오, 전기제품 등	IRAM 및 INTI 표준에 따라 안전인증
기계금속	IRAM	유압기중기, 도로기계, 견인기기 등	안전인증
가스	IRAM	가스제품 전반	가스제품 인증유형: IRAM CD PA 007
	INTI		아르헨티나가스공사의 가스장비 안전표준에 의함
통신	CNC	휴대폰, 무전기, 위성통신장비 등	통신위원회 형식승인, 판매허가 등 담당
수송기기	CNR	자동차, 트럭 등	운송규제위원회 형식승인 및 관리 등 담당
자동차부품	IRAM	자동차부품	안전성 검사
자전거	INTI	자전거	안전성 검사
	INTI	타이어·튜브	안전성 검사
엘리베이터	INTI	엘리베이터 및 부품	안전성 검사

자료: KOTRA 아르헨티나 무역관) 인증

## 2. 아르헨티나의 통관 절차

### 가. 수입통관 절차

- 아르헨티나의 수입통관은 ① 사전수입신고 → ② 서류 및 물품 심사 → ③ 관세 및 재세납부 → ④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선적서류 기재의 정확성 정도와 컨테이너(FCL 혹은 LCL)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상화물의 통관은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소요됨
- 아르헨티나 수입통관 시스템은 2012년 2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전수입신고(DJAI)가 완료되어야 함
  - 사전수입신고제도 시행 전에는 수입물품 통관에 30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동 제도 시행 후 통관 시 서류 및 물품 검사 시간이 줄어듦
    - 통관 소요시간의 단축은 사전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이 불가한 수입품을 먼저 선별하기 때문임
- 사전수입신고제도(DJAI)<sup>32)</sup>란 수입업자가 사전수입신고서와 물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연방조세청과 산업부 산하 교역청에 제출하여 10일간 검토를 받게되는 것임
  -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하나 사전수입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함
  - 제출서류는 수입업자의 사업자등록증(CUIT), 상호, 관세사의 사업자등록증(CUIT), 외국환, 제품사양서, 단가, FOB 총액, HS 코드번호, 거래단위, 물량, 원산지, 경유지, 제품상태, 인코텀즈, 선적 및 도착 예정일 등의 정보임
- 수입통관 시 요구되는 필수서류는 총 3개며, 그 외 수입물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사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함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본 및 사본 3매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2) 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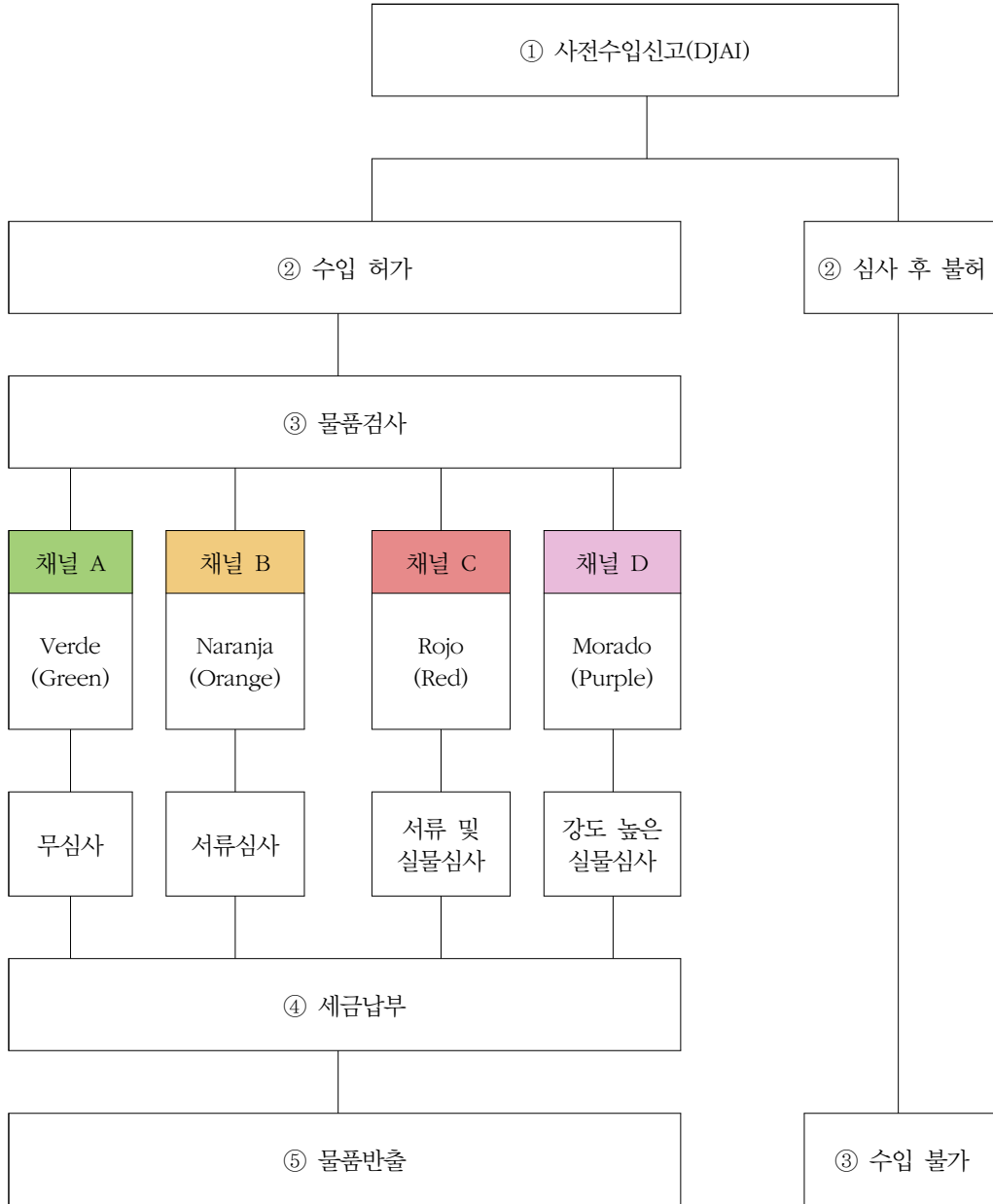
-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 수출업자가 보험을 확보한 경우에 제출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L/C상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에 필요
  - 그 외 수입물품에 필요한 각종 허가, 증명서 등
- 수입자는 경제부(MECON)에 납세자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며, 납세자등록증을 통해 관세 납부 등의 행정처리가 가능함
- 최초 거래 시 등록하면 납세자고유번호가 발급되며 향후 수출입 통관 시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함
- 사전 수입신고 후 승인된 물품의 경우 마리아시스템(Sistema Informatico Maria)을 통해 전산신고되며, 시스템상 입력이 완료되면 선적서류에 대한 세관 심사방법이 지정됨
- 수입신고 시 선적 관련 서류를 통관사에게 제출하면 통관사는 세관의 마리아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선적서류 관련 정보를 입력함
- 물품도착 후 15일 이내에 통관수속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착지 항구 세관창고에서 보관기관은 10일로 단축함
- 1997년 3월 탈세와 세관의 부정부패의 사전방지 및 창고화물 적체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행정령(379/97)으로 규정함
    - 과거 수입물품 통관 업무는 수입물품 도착 후 60일 이내에 시작한 것과 비교했을 때 통관 시 소요시간이 줄어들음
- 아르헨티나 세관은 Verde(초록), Naranja(주황), Rojo(빨강), Morado(보라) 등 네 종류의 서킷(Circuito)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Verde 검사대는 서류 및 화물의 심사 없이 즉시 통관하며, 검사는 생략되나, 선적 서류 원본을 화주 자격 증빙으로 제출해야 물품을 인도해 갈 수 있음

- Naranja 검사대는 선적서류 등 서류심사(Revision documentaria)를 거쳐 관세 및 처리비용 납부 후 통관되며 통상 1~2일 소요됨
- Rojo 검사대는 서류 및 실물 검사 후 통관하며 3~4일 소요됨
- Morado 검사대는 가장 까다로운 심사 라인으로, 세밀한 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이 가능하며 10일 내외 소요됨
  - Morado 검사대는 1999년부터 수입품의 언더밸류 및 관세 포탈 방지를 목적으로 강도 높은 화물 심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주로 가전, 섬유, 완구, 잡화 및 타이어 등 소비재가 주요 검사대상임
  
- 수입 물품의 컨테이너 검사는 화물 무게, 화물 개수, 수입품의 실물 확인, 상품 평가, 서류 확인, 컨테이너가 봉인된 곳의 원산지 통제 등임
  
-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의 약 90%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항구에서 처리되며, 연간 최고처리 용량은 1,200만TEU<sup>33)</sup>임
  - 아르헨티나는 대서양 해변을 따라 38개의 항구와 주요 강변을 따라 25개의 항구가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항 및 항만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 처리 물동량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sup>34)</sup>
  
- 수입물품은 반출 기일 경과 시 수입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되며 기준일은 90일임
  
- 화물 운송업체는 화물 목적지 도착까지 보험 가입과 10만달러의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조치함
  
- 세관의 업무 시간은 월~금, 08:00~13:00, 14:00~17:00임

33)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34) 부에노스아이레스 항: [www.puertobuenosaires.gov.ar](http://www.puertobuenosaires.gov.ar),  
항만관리위원회: [www.consejoportuario.com.ar](http://www.consejoportuario.com.ar)

[그림 Ⅲ-4] 아르헨티나의 수입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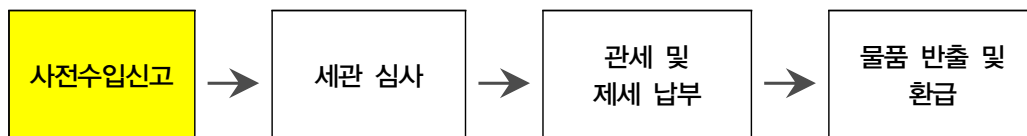
자료: 연방조세청(AFIP) 홈페이지의 proceso de importacion내용 인용

## IV. 통관 절차별 고려사항

〈표 IV-1〉 아르헨티나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단 계	유의사항
1. 사전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RCOSUR 상품분류체계인 NCM코드를 사용하므로 7, 8번째 자리 확인</li> <li>○ 수입되는 품목별로 통관을 처리하는 세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선적 필요</li> <li>○ 아르헨티나로 수출되는 제품은 선적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에 대한 한국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 필수</li> <li>○ 전기·전자제품에는 IRAM인증, 완구·용기제품에는 INTI 인증, 의료기기에 는 ANMAT 인증이 필요하며 획득까지 약 6개월 소요</li> <li>○ 업무 안전성을 위해 제품 특성별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세관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등록 통관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li> <li>○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원산지표시, 미터 표시가 필수이며 가공식품의 경우 제 품표시와 식품성분이 아르헨티나 규정과 일치하도록 화물포장박스에 표시하 는 것이 의무</li> </ul>
2. 세관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에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 등 수입관련 서류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 성 여부를 심사</li> <li>○ 세관의 화물선별 시스템은 화물을 Verde, Naranja, Rojo, Morado 등 4가지 라인으로 분류되어 서류 및 물품 심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rado 라인은 Rojo 라인보다 더 높은 강도의 화물 검사이므로 주의</li> </ul> </li> <li>○ 신고가격이 의심스러운 경우 세관에서 가격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성실 신고 시 수입신고가 반려되며,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벌금 부 과</li> </ul> </li> </ul>
3. 관세 및 제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관세는 CIF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며, 관세 외에 통계세, 부가가치세, 추가 부가가치세, 영업세,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li> <li>○ 부가가치세(21%), 추가 부가가치세(10%)는 '선납세' 개념으로 통관 전 금융비 용이 발생하므로 자금 총당 시 유의</li> <li>○ 대외공동관세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품분류(NCM)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과되 는 세율 확인이 필요</li> <li>○ 세금 납부현황은 연방조세청(www.afip.gov.ar)에서 확인 가능</li> </ul>
4. 물품 반출 및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rado 검사대는 공식가와 신고가와의 차액을 통관 전 전액 현금 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li> <li>○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가능함</li> </ul>

## 1. 사전수입신고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회원국으로 HS 코드 대신 NCM 코드에 따라 품목 분류함
  - 제11275호 상품표시법(Merchandise Marking Act), 제22802호 무역로열티법(Commercial Loyalty Act), 무역청 제100/83 규정을 참조 따라서 국내법상 규정하고 있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고시 규정에 의거함
  - 어느 국가든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아르헨티나의 NCM 분류 역시 분쟁이 많은 이슈 중의 하나임
- 사전수입신고는 신고서 제출 후 10일간의 검토 과정을 거치며 수입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때 수입이 불가능한 일종의 통관 장벽임
  - 수입업자는 사전수입신고서와 물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연방조세청과 산업부 산하 교역청에 제출해야 함
  - 사전수입신고를 완료하지 않고 물품을 선적한 뒤 아르헨티나에 도착할 경우 세관은 국내 물품반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물품 운반 등 수입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게 됨
- 수입 허가는 산업부 소속 무역정책부 홈페이지([www.comercio.gov.ar](http://www.comercio.gov.ar))의 무역통합시스템(SISCO: Sistema Integrad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해 받음<sup>35)</sup>
- 의약품 및 의료제품을 수입할 때는 보건부에 수입업자 상품등록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35) 2011년 8월 4일 관보, Resolucion 496에 근거함

하며 농수산물,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 동 품목들의 경우 수출국의 품질, 규격 및 위생수준이 아르헨티나보다 높거나 엄격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는 형식적으로 치러지며 자동 승인이 됨

□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는 물품의 수입허가제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수입허가제가 적용되는 물품은 섬유 제품류, 목재 가구류, 너트류, 농기계류 및 트랙터, 에어컨, 금속제품, 전자제품, 원사 및 원단, 고급승용차,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등임

□ 아르헨티나로 수입하는 물품에 따라 필요한 인증이 다르며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IRAM 인증은 전기·전자, 화학, 기계·금속제품 등의 제품에 필요하며, INTI 인증은 완구, 용기, 시멘트, 전기제품, 신발, 포장지, 가스장비 등 제품에 필요하고, ANMAT 인증은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 해당함

□ 통관 시 수입물품과 수입서류의 불일치 및 과도한 언더밸류 등은 현지 세관의 엄격한 수입심사를 초래하므로 선적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재 및 수입가 신고로 통관 지연 및 벌금 부과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 원산지가 중국이고 수출지가 한국인 경우 중국에서 작성한 서류를 한국 소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주재 상사들은 최저가격제도 적용대상 품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대하여 영사확인을 받고 있음

#### 나. 업무상 유의점

□ 원산지 증명서는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 혹은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상공회

의소 인증 및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됨

- 아르헨티나는 품목별로 통관을 처리하는 세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수출 전 지정세관을 확인해야 함
  - ① [www.infoleg.gov.ar](http://www.infoleg.gov.ar) 접속 → ② infolegInternet 클릭 → ③ anexos 클릭 → ④ 품목별 지정세관 확인
- 중고 차량(대형 트럭 및 버스도 포함)일 경우 수입이 불가능함
-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국내 관세평가분류원 산하 HS 국제분쟁신고센터 (042-714-7130)를 통해 WCO 품목분류 신청 요청을 할 수 있음
  - WCO 계약국<sup>36)</sup>의 관세당국을 거쳐야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됨
-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적하목록상에 빠짐 없는 기재가 요구됨
- 아르헨티나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해당 품목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 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예상치 못했던 많은 세금을 내야 하거나, 현지 수입상이 수입을 거절할 경우 물품이 한국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음
- 한국무역협회 통상·수입규제 홈페이지<sup>37)</sup>에서는 세계 각국의 통상 현안을 비롯하여 국가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정보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 기본 홈페이지<sup>38)</sup>에서는 하단 ‘사업별 사이트’ 메뉴 중 ‘통상수입규제’로 접속 가능함
  - 현재 아르헨티나가 반덤핑관세 등의 규제를 가하는 품목 확인을 위해서는 ‘KITA 통

36) contracting state, 조약의 발효 여부에 관계 없이 조약의 구속을 받기로 동의한 국가를 의미

37) <http://antidumping.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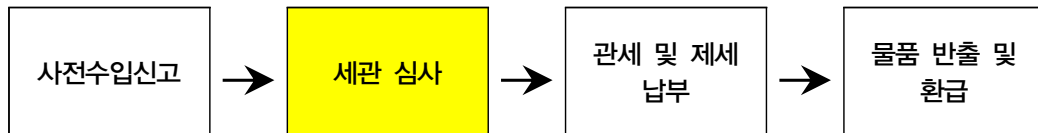
38) [www.kita.net](http://www.kita.net)

- 상·수입규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수입규제 현황’ → ‘주요국 제소 및 규제내역’ →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음
  - 또한 ‘수입규제 현황’ → ‘국가별 현황’에서는 필요 정보 지정 후 검색 기능을 통해 영문 품명과 정확한 HS 코드 등 보다 세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에 WTO에서 반기별로 공개하는 국가별 규제 동향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상·수입규제’ 사이트 상단 메뉴 중 ‘각국 규제동향’에서 확인 가능함
  
- 아르헨티나는 한국을 대상으로 냉연강판(12개 품목), 아연강판(8개 품목)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고, 종료 재심 후, 연장 적용 중임
  - 한국은 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 간 관세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세관 협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 대외교역청에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공표함
  - 2012년 4월 23일부로 행정령 39/2012를 관보에 게재함
  - 동 품목은 수출량이 많아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sup>39)</sup>
  
- 의료기기, 전자제품 등의 안전인증 승인 취득 시 6개월 이상 소요됨
  - 미국, EU 등에서 취득한 안전인증 승인 증빙서를 요구하므로 선진국 실적이 없는 제품일 때 사실상 현지시장 진출이 불가함
  
-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원산지 표시, 미터 표시가 필수이며 가공식품의 경우 제품 표시와 성분이 아르헨티나 규정과 일치하도록 화물포장박스 표시가 의무적임

---

39) KOTRA 아르헨티나 무역관

## 2. 세관 심사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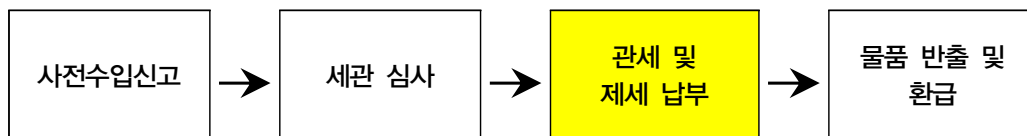
- 세관에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 등 수입관련 서류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함
- 세관의 화물선별 시스템은 화물을 Verde, Naranja, Rojo, Morado 총 4개 라인으로 분류하여 서류 및 물품 심사를 진행함
  - Morado 라인은 Rojo 라인보다 더 높은 강도의 화물 검사이며, 통관 시 통상 10일 이상이 소요됨
  - 최근 아르헨티나의 수입 규제정책으로 인해 통관 시 Morado 라인으로 배정되는 수입물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신고가격이 의심스러운 경우 세관에서 가격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구함
  - 불성실 신고 시 수입신고가 반려되며,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벌금이 부과됨

### 나. 업무상 유의점

- 세관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00~13:00, 14:00~17:00이나, 행정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업무는 오전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함
- 공식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을 통관 전 전액 현금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과거에는 과세평가상에 차이가 발생하면 보증보험 제출을 통해 최종 심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현금 또는 은행보증서 공탁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과 은행보증서 발급은 미국 달러 예치로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자금 부담이 될 수 있음
- 최종 관세액 결정에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 수입업자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준가 산정에 있어서도 생산요소 비용이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내생산업자들의 평균원가를 반영하고 있음

### 3. 세금 납부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수입관세는 CIF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며, 관세 외에 통계세, 부가가치세, 추가부가가치세, 영업세,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 추가 부가가치세는 연방조세청(AFIP)에 선납해야 하므로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재세금 등 금융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해야 함
- 수입신고 후 연방조세청(AFIP)에서 교부하는 수입자번호에 따라 관세 확인이 가능함
  - ① 연방조세청(AFIP) 접속 → ② [그림 IV-1] Sistema Informatico Maria 프로그램 다운 → ③ [그림 IV-1] Pagos de aduaneros 클릭 → ④ [그림 IV-1] 수입업자 고유번호(C.U.I.T) 입력(첫째 칸), 참조서류 확인(셋째 칸) → ⑤ [그림 IV-2] 납부해야 하

는 세금 및 납부 기한을 볼 수 있음

- 부가가치세(21%), 추가 부가가치세(10%)의 경우 선납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통관 전에 발생하는 동 세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마련해야 함을 기억해야 함
- 대외공동관세는 MERCOSUR 외의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되는 관세이나, 이는 가이드 라인일 뿐 품목분류(NCM 코드)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세율을 확인하여 관세율 및 기타 세금을 계산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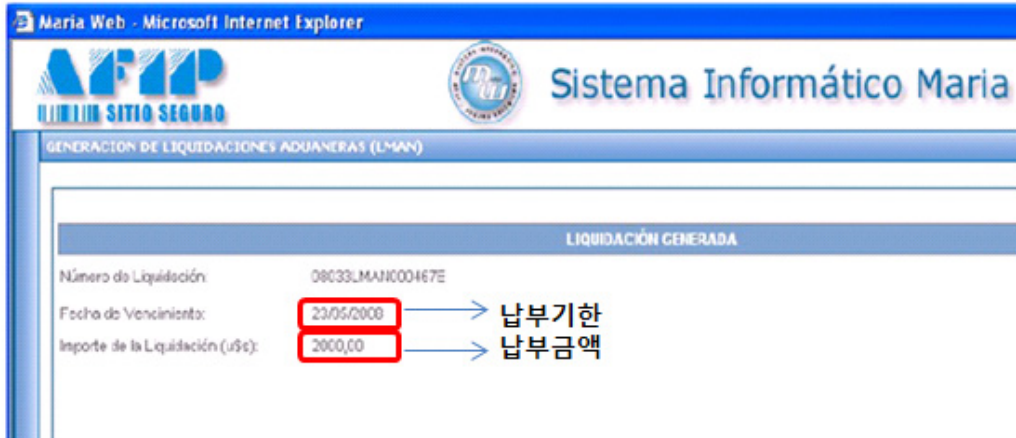
[그림 IV-1] 세금 납부 신청 WEB

The screenshot displays the 'Sistema Informático Maria' web applic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GENERACION DE LIQUIDACIONES ADUANERAS (LMAN)'. It contains a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 Importador / Exportador: 20704010024 GONZALEZ OSCAR PRUEBA DE LONGITUD DE NOMBRE PARA VESS
- Despachante: [Empty]
- Documento de referencia: DET - DECLARACION DETALLADA
- Motivo de Liquidación: [Empty]
- Fecha del Momento Imponible: [Empty]
- Importe de la Liquidación (U\$): [Empty]

Below the form is a section labeled 'CONCEPTOS' which contains the message: [No se han cargado conceptos].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bar with 'INFORMACION DE LA SESION' and buttons for 'Ingresar conceptos' and 'Generar Liquidació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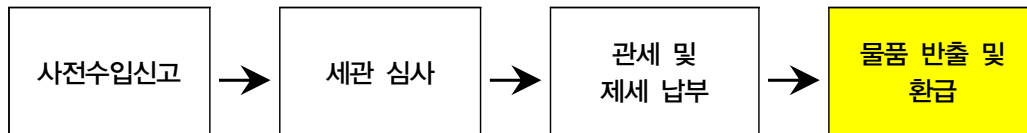
[그림 IV-2] 납부한 세금 확인 가능 웹



#### 나. 업무상 유의점

-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35%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아르헨티나는 MERCOSUR 회원국 및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라 중남미 통합 연합 회원국들에게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음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자 제39조 결의에 의거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공통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며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시행을 발표함
  
- 외환규제 심화로 달러 송금이 어려워져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 지불이 어려움
  - 따라서, 아르헨티나로 수출 시에 아르헨티나 페소(ARS)로의 대금 지불 등의 조건을 원할 경우는 환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야 함

#### 4. 물품 반출 및 환급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제품 불량으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하면 비용 및 서류 절차 등이 복잡해 화물반송(Ship Back)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이런 경우 현지 통관업체에 상담하는 것이 권고됨
  - 원칙적으로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대한 증빙이 있으면 회수 조치가 가능하나 물품 회수 과정상의 복잡성과 고비용으로 사실상 불가능함
- 수입서류 정정은 배가 출항한 뒤 3일 이내 혹은 상품이 아르헨티나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관령 제 266호에 의거하며 정정서류의 서명날인은 선적항구의 에이전트 증명을 받아야 하나, 영사관 허가는 불필요함
-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가능함
  - 관세환급용 구비서류는 내국세일 경우 선적허가서, 회사설립 인가서, 내국세 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등이며, 수출세의 경우 관세 환급용 위임장 원본 및 사본, 주민증 사본 등임

##### 나. 업무상 유의점

- 수출업자는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원부자재의 소요증명을 상공청의 확인을 받은 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관세 환급을 받게 되고, 일단 확인을 받은 반복 수출건은 자동 확인이 되며, 상공청은 90일 이내에 이를 사후 심사하게 됨

- 잠정통관은 수출기공용으로 수입된 원자재, 중간재와 자본재에 적용되며, 수출업자는 수입 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수출해야 함
  - 1회에 한해 180일 연장 가능함

## 참고문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출현황 모니터링』, 2012.

외교통상부, 『2011 외국의 통상환경』, 2011. 2.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2013.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3. 3.

관세무역개발원, [www.custr.com](http://www.custr.com)

대한민국 관세청,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아르헨티나 KBC,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http://www.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정보서비스, [www.global.korcham.net](http://www.global.korcham.net)

미국 무역 대표부, [www.ustr.gov](http://www.ustr.gov)

세계무역기구, [www.wto.org](http://www.wto.org)

세계은행, [www.wb.org](http://www.wb.org)

아르헨티나 경제부(MECON), [www.mecon.gov.ar](http://www.mecon.gov.ar)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CNCE), [www.mecon.gov.ar/cnce/index.htm](http://www.mecon.gov.ar/cnce/index.htm)

아르헨티나 법령정보(INFOLEG), [www.infoleg.gov.ar](http://www.infoleg.gov.ar)

아르헨티나 상업회의소(CAC), [www.cac.com.ar](http://www.cac.com.ar)

아르헨티나 자동차생산협회(ADEFA), [www.adefa.com.ar](http://www.adefa.com.ar)

아르헨티나 정보통신협회(CICOMRA), [www.cicomra.org.ar](http://www.cicomra.org.ar)

아르헨티나 정부입찰청(Oficina Nacional de Contrataciones)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www.bcra.gov.ar](http://www.bcra.gov.ar)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www.indec.gov.ar](http://www.indec.gov.ar)

아르헨티나 투자진흥공사(ProsperAr), [www.prosperar.gov.ar](http://www.prosperar.gov.a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전 세계 FTA 현황, [www.bilaterals.org](http://www.bilaterals.org)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www.tbt.kr](http://www.tbt.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http://www.kita.net)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www.ois.go.kr](http://www.ois.go.kr)

## 부록 I. 비즈니스 팁<sup>40)</sup>

- 아르헨티나 기업과 사업 미팅을 원할 시 사전에 면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함
  -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1년 정도의 출장 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최소 2주 전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재확인해야 함
  
- 아르헨티나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금기시되는 음식은 없으나 매운 음식, 국물 있는 음식 등은 선호하지 않음
  - 아르헨티나인의 주식은 소고기이며 최근 일본 스시가 중상류 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 정부부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 단, 운전면허·세관 등 민원부서의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아르헨티나 인구의 95% 이상이 백인인데 이는 유럽 이민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행이 미국식보다는 서구적인 색채가 강함
  -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유럽적이며 관공서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정장차림임
  
- 일반적으로 면담을 신청한 쪽이나 방문을 하는 쪽에서 예의상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이며 선물로는 가죽, 와인 등 아르헨티나에서 흔한 물건이나 칼, 가위 등과 같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물건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수입 규제가 심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한국적인 선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40) KOTRA 아르헨티나 무역관) 비즈니스 에티켓,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아르헨티나인의 성명은 보통 2개 내지 3개로 되어 있는데 스페인과 달리 모성을 쓰지 않고 있으므로 명함을 받았을 때 성(姓)과 이름(名)을 잘 구분해야 함
  - Maria Hernandez의 경우 Maria는 이름, Hernandez는 성이고, Roumulo Antonio Lopez의 경우 Romulo는 이름, Antonio Lopez가 성임
  
- 아르헨티나 회사에서 Presidente는 사장, Director General은 사장 또는 이사, Director는 이사 또는 부장, Gerente는 과장 정도의 직급을 표시함
  
-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여타 중남미에 비해 매너를 중시하므로 정장 착용이 바람직하며 되도록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인식됨
  
- 숫자 7 또는 10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6과 13의 경우 불운의 숫자로 여겨 13층이 없는 건물이 많음
  
-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에 있어 북반구에 있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로 한국이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임
  -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있으나, 봄과 가을은 짧은 편이며 여름은 습하고 더우며 평균 25℃ 정도이고, 겨울은 지역에 따라 다름
  
- 현지 출장 기간은 12월 중순~3월 초 여름 바캉스 시즌은 피하도록 함
  - 그 밖에도 부활절(4월 초), 겨울 휴가(8월) 등은 현지 출장방문 시기로 부적합함
  
- 공항소재 환전소 또는 은행의 환율로 환전하는 것보다 시내 환전소,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함
  
- 현재 달러화 구매 규제가 매우 심해져 한번 폐소로 바꾼 돈은 다시 달러로 바꾸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체류 기간 동안에 필요한 정도만 환전하는 것이 좋음

- 아르헨티나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치안 상태가 악화되어 납치, 강도, 살인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도보 이용은 자제하며 외국인의 경우 심야 택시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음

##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웹페이지	<a href="http://arg.mofa.go.kr/">http://arg.mofa.go.kr/</a>
주소	Av. del Libertador 2395,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1425) Argentina
전화번호	(54-11) 4802-9665/8865/8062/0923
팩스번호	(54-11) 4803-6993
이메일	<a href="mailto:argentina@mofa.go.kr">argentina@mofa.go.kr</a>

■ 코트라 아르헨티나 무역관(KBC)	
웹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KBC/buenosaires">www.kotra.or.kr/KBC/buenosaires</a>
주소	Av. Cordoba 950, Piso 2A, (1054) Buenos Aires, Argentina
전화번호	(54-11) 4393-3110
팩스번호	(54-11) 4393-2822
이메일	<a href="mailto:kotra@kotra.org.ar">kotra@kotra.org.ar</a>

■ 아르헨티나 경제부	
웹페이지	<a href="http://www.mecon.gov.ar">www.mecon.gov.ar</a>
주소	Hipólito Yrigoyen 250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전화번호	(54-11) 4349-5000
이메일	<a href="mailto:ciudadano@mecon.gob.ar">ciudadano@mecon.gob.ar</a>

### ■ 아르헨티나 통계청

웹페이지	www.indec.gov.ar
주소	Av. Julio A. Roca 615, PB, C1067ABB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Argentina
전화번호	(54-11) 4349-9200
팩스번호	(54-11) 4349-9201
이메일	indecweb@indec.mecon.gov.ar

### ■ 아르헨티나 관세청

웹페이지	www.afip.gov.ar/aduana
주소	Azopardo 350 1er. Piso, Buenos Aires, Argentina
전화번호	(54-11) 4338-7653
팩스번호	(54-11) 4338-7654

### ■ 아르헨티나 무역위원회

웹페이지	www.cnce.gov.ar
주소	Paseo Colon 275 Piso 7, Buenos Aires, CP 1063, Argentina
전화번호	(54-11) 4348-1710
팩스번호	(54-11) 4348-1711

### ■ 아르헨티나 투자진흥청

웹페이지	www.inversiones.gov.ar
주소	Esmeralda 1212, Floor 6,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C1005AAG) República Argentina
전화번호	(54 11) 4819-7488
이메일	info@inversiones.gob.ar

###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웹페이지	www.bcra.gov.ar
주소	Reconquista 266 C1003ABF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전화번호	(54-11) 4348-3500

■ 아르헨티나 정부입찰청	
웹페이지	<a href="http://www.argentinacompra.gov.ar">www.argentinacompra.gov.ar</a>
주소	Av. Roque Saenz Peña 511 3er. piso C.P. (C1035AAA) - Ciudad de Buenos Aires - República Argentina
전화번호	0810-999-9920
이메일	<a href="mailto:onc@jefatura.gov.ar">onc@jefatura.gov.ar</a>

■ 아르헨티나 자동차생산협회	
웹페이지	<a href="http://www.adefa.com.ar">www.adefa.com.ar</a>
주소	Viamonte 1133, 7 Piso - (C1053ABW) - Buenos Aires - Argentina
전화번호	(54-11) 4372-4002
팩스번호	(54-11) 4372-4058
이메일	<a href="mailto:info@adefa.org.ar">info@adefa.org.ar</a>

## 부록 Ⅲ. 아르헨티나 관세법<sup>41)</sup> (Codigo Aduanero de Argentina)

- 아르헨티나의 수출입관련법은 법령22415/81호이다. 이법은 3개 서문과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문: 적용범위, 수출입개념규정, 수출입상품의 개념규정
  - 제1장(법적주체): 세관의 조직, 기능 및 권한, 수출입자 및 기타관계자 개념규정
  - 제2장(적용범위): 일반규정, 적용범위
  - 제3장(수입규정): 물품의 도착 및 수입지
  - 제4장(수출규정): 수출지 및 물품의 발송
  - 제5장(수출입일반규정)
  - 제6장(통관관련 특별규정): 운송관련규정, 특수물품(군수, 안보 관련 차량 등) 취급규정, 컨테이너, 소화물, 선용품, 소포, 샘플, 외교관면세품 등 취급규정, 재수입품, 국경운송, 구호물자 등 취급규정
  - 제7장(세관적용범위): 영해 및 대륙붕, 무관세지역, 특별관세 지역
  - 제8장(수출입금지규정): 금지형태, 금지범위, 제한적금지, 수출입 금지 설정 및 해제
  - 제9장(세제규정): 수입관세, 관세상당액(Tariff Equivalent),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수출세, 특혜관세, 통계세, 창고세등
  - 제10장(수출촉진규정): 관세환급, 기타수출촉진관련절차
  - 제11장(상호주의특별규정)
  - 제12장(통관관련벌칙규정)
  - 제13장(관세우선납부규정)

41) <http://www.infoleg.gov.ar/infolegInternet/anexos/15000-19999/16536/texact.htm>, 아르헨티나 관세법 원문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아르헨티나>관세법(Codigo Aduanero) 혹은 아르헨티나 법무부 법령자료실(infojus)참고

- 제14장(절차규정)
- 제15장(보완조치규정)
- 제16장(경과조치규정)

□ 법령제2248/91호

- 수입 자유화조치를 위해 입법해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 할당 등 기존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대폭 철폐한 바 있다. 자동수입승인품목의 경우 수입허가신청을 하면 수입통계시스템(REDI: Régimen Estadístico de Importación)에 입력되어 자동 승인된다.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아르헨티나

---

2013년 12월 23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옥 동 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98-5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